

“Always together, 지역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 제2회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워크숍

- 2015.08.27(목)~08.28(금)
-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4층)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지부

## Contents

- 워크숍 계획 ..... 3
- 《기조강연》 복지환경을 통해 본 협의체의 역할
  - 발표 : 정연정(마중물연구소 부소장) ..... 5
- 《집중세미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변화
  - ①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동향
    - 발표 : 정숙희(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40
  - ②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년을 통한 미래의 민관협력
    - 발표 : 이경온(전국협의체 고문) ..... 64
  - ③ 18개 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 발표 : 남궁제정(도실무협의체 대표) ..... 78
  - ④ 시군 읍면동 인적안전망 확충 우수 사례 발표
    - 발표 : 이승우(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담당) ..... 88
- 《부록》
  -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락망 ..... 99

## 제2회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계획

“Always together, 지역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 강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
- 지역복지 민관협력의 핵심 복지체계로서의 정체성을 재인식 및 격려하고,
-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비전을 공유하여 지역 간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자 함.

### I 추진 개요

- 일 시 : 2015.08.27(목) 13:00~08.28(금) 12:30 / 1박2일
- 장 소 : 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4층)
- 추진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계기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역 실무자 참여 확대
  - 18개 시군의 네트워크 강화로 강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비전 공유
- 대 상 : 150여명
  - 1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위원장
  - 1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상근간사, 관련 공무원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 주 관 :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강원도지부
- 후 원 : 보건복지부, 강원도, 동해시

### II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분)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b>8월 27일(목)</b>				▶컨벤션홀(4층)
12:30~13:00	30'	접 수	· 등록	
13:00~13:30	30'	개회식	· 대회선언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대회사, 환영사, 축사 · 기념촬영	▶사회 : 박윤숙 (동해시보장협의체간사)
13:30~15:00	90'	기조강연	· 주제 : 복지환경을 통해 본 협의체의 역할	▶ 정연정 (마중물연구소부소장)
15:00~18:00	180'	접 종 세미나	· 주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변화	▶ 정숙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1>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지역 사회복지 동향	▶ 이경운 (전국보장협의체교문)
			<2>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년을 통한 미래의 민관협력	▶ 남궁제정 (강원도실무협의체대표)
			<3> 1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 이승우 (속초시의명복지지원담당)
18:00~18:30	30'		· 숙소배정 및 식사준비	
18:30~21:00	150'	석 식	· 건배사, 식사 및 화합의 시간	▶호텔식(뷔페)
21:00~			· 자유시간	
<b>8월 28일(금)</b>				▶컨벤션홀(4층)
07:30~09:00	90'	조 식	· 조식	▶호텔식
09:00~09:30	30'		· 숙소별(개인별) 체크아웃	
09:30~11:30	120'	합 동	· 멤버십 트레이닝	
11:30~12:15	45'	평 가	· 워크숍 평가	
12:15~12:30	15'	폐회식	· 폐회사	
12:30~		중 식	· 중식 및 해산	

※ 내용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지환경을 통해 본 협의체의 역할

정연정 | 마중물 부설 마중물 연구소 부소장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프로젝트조정자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과 역할

정연정(마중물 사회정책연구소)

### 1. 사회권, 인간지위의 평등권

독서모임에서 만난 명선(가명)씨의 얘기다. 명선씨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야기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비정규직인 그의 사연은 이렇다. 하루는 사장이 비정규직만 불러 회식을 했는데, 문제는 사장의 발언이다. 사장은 세월호 사태로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아빠를 "이혼한 주제에 지금 와서 쇼하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 명선씨는 "이혼해도 자식이다. 유민 아빠는 비정규직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양육비도 보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고용이 불안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명선씨는 이런 자신이 미웠으며 이제 책임기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인문학 책들은 성찰하고 자기계발에 힘쓰고 불의에 맞서라고 했는데, 책대로 하지 못해서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대부분의 국립대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도입됐다. 대학과 교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지만 대부분의 국립대는 이를 수용했다. 대학예산 지원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도리가 없었다. 비정규직인 명선씨도 확신에 찬 사장에게 어떻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내 직장에서도 그랬듯이 국립대 교수가 명선씨였더라도 똑같았을 것이다. 명선씨가 아니라 이견을 드러낼 수 없는 권력관계가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해고되었을 때 생존권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권이 보장되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 사회라면 이렇게까지는 무기력하지 않았을 것이다.<sup>1)</sup>

명선씨가 사는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이다. OECD 회원국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최소 3회 이상 진행된 누가 보아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명선씨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명선씨는 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당연히 해고될 것이 두려워서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자유권이 주어진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해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시장임금으로

1) 이 부분은 유범상(서울경제, 2014. 9)에서 가져 왔음.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사회임금은 취약한 상태에서 '해고는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명선씨의 사례는 사회권에 대한 통찰을 준다. 마살에 의하면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의 두 권리가 자유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복지권에 해당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자유권에 기반한 것이고 사회권을 보장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권은 무엇인가. 그동안 사회권은 수당의 관점에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의 사회임금에서 접근해 온 것이다. 하지만 마살은 사회권이 소득의 평등보다도 지위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권이 권력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사회권은 사회임금으로 표상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임금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권력의 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에스핑 앤더슨이 말한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변수 이면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권력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연상시킨다.

본 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권의 실현에 그 존재의미를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례발굴을 넘어서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상상과 실천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관점에서 복지국가유형과 철학을 살펴보고, 지역복지의 철학과 실천방안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사회권과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의 경쟁의 집과 사회민주주의의 국민의 집

### 1) 경쟁의 집과 국민의 집

####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정책

가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가난이 운명이라는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따라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이 최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본다. 자신의 근면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경우 멸시와 함께 동정과 자선의 시선이 불가피하다. 가난이 구조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사회정책과 정치를 통해 가난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도움은 그의 권리이다.

가난을 봉건제에서는 운명으로 보았다. 자본주의의 등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고, 국부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니, 최악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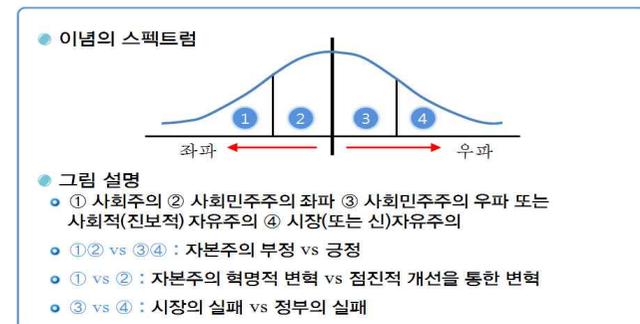
이상의 상이한 관점은 상이한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입장에서 가난의 해결은 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입장에서는 자조, 근면, 자립의 정신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 입장은 빈곤은 개인의 품성이나 도덕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고 따라서 사회적 연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세 가지 상이한 관점은 각각 상이한 철학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로 중세 가톨릭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입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제가 제시한 견해는 역사 속에서 시대와 사람에 따라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점 즉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에서 중요한 기준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이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빈곤의 원인인가 아니면 성장의 동력인가? 쓸 만한 것인가, 전복되어야 할 것인가, 이상향인가?

[그림 1]에서 1, 2번과 3, 4번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나뉜다. 왼쪽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적 견해라면, 오른쪽이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행의 문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는가? 폭력혁명인가 개량인가? 3번과 4번의 경우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문제와 사회복지(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이다.

[그림 1] 이념의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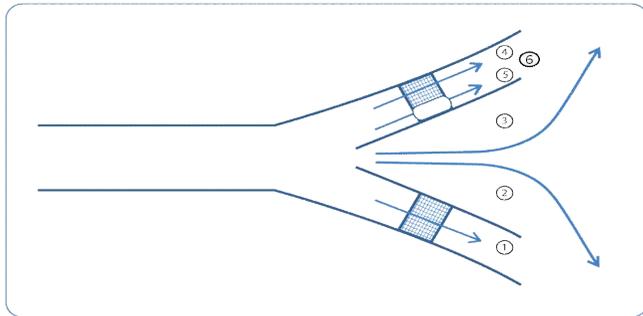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은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인정과 극복의 두 관점으로 대별된다. [그림 1]에서 1번과 2번이 극복을 대변한다면 3번과 4번은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1번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공적 소유에 기반을 둔 계급 없는 사회를 꿈꾼다면 2번은 선거와 공기업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를 질식시켜 끊임없는 개혁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재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3번과 4번의 갈림길은 시장과 국가에 대한 태도이다. 4번은 시장을 모든 사회운영의 원리의 중심에 놓고 국가를 시장의 보충적인 실체로 바라본다면, 3번은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 빈곤, 독점 등을 국가가 완화하여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3번은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귀결되었다면 4번은 미국과 영국을 전형으로 하는 앵글로색슨 모델로 수렴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념을 이야기 할 때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한다. 이것을 [그림 1]의 위치에 각 입장에 이름을 붙이면, 4번은 시장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1번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2번과 3번에 위치한다. 본 글에서는 2번은 사회민주주의 좌파, 3번은 사회민주주의 우파라고 잠정적으로 분류하자.

[그림 2] 여섯 가지 갈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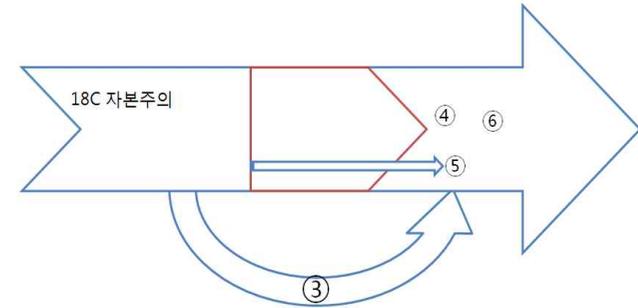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자본주의의 사회복지이다. 우선 두 개의 대립적인 견해와 두 개의 변종이다. 길을 다시 보자. 당시에는 4갈래길이 있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첨부하여 6가지 길을 제시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여섯 가지 갈래길이 있다. 그 중에서 자본주의의 길은 3번, 4번, 5번, 6번처럼 4가지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길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관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동원하여 자신들 방식대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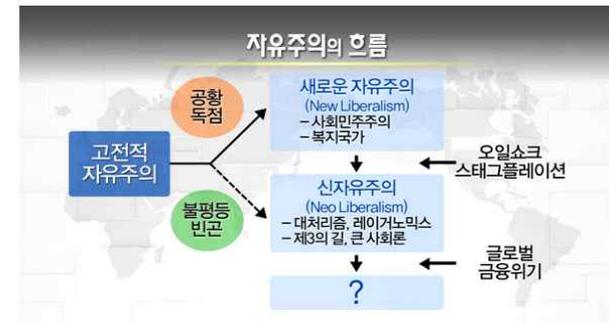
[그림 3]에서 처럼 자본주의의 길을 확대해서 보자. 5번과 6번의 길이 보이지 않는가? 이때 5번 길은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기든스에 기대어 주창한 제3의 길이다. 6번 길은 영국 보수당의 케머론 현 총리가 주창한 큰 사회론(big society)이다.

[그림 3] 네 개의 갈래길



여기에서 간략하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념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자. [그림 4]를 보자. 16세기-18세기에 나타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독점, 불평등, 독점과 공황을 겪으면서 새로운(new) 자유주의로 변신한다. 하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로, 또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로 나타난다. 이때 복지국가를 사회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도 한다.

[그림 4] 자유주의의 흐름



이 새로운 자유주의는 오일 쇼크와 스태그 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점차 신(neo)자유주의로 변화한다. 영어표현 new와 neo는 전자가 새로운 것이고 후자는 새롭기는 한데 기존의 것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깐 neo-liberalism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 neo라는 것을 의미한다.

neo-liberalism 이것은 또다시 금융위기에 빠지고 제3의 길, 또는 큰 사회론 등으로 자기 변신을 모색한다. 이제 new-liberalism의 이론가인 케인즈와 neo-liberalism의 이론가인 하이에크는 서로가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면 대립한다.

## 상이한 철학과 서로 다른 국가유형

상이한 철학은 서로다른 국가유형을 만든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인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복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실직됐을 때, 국가가 실업수당 또는 연금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기준인 '계층화'는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뉘지는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사회보험이 주로 직종과 계층별로 구성돼 있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통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돼 불평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을 앵글로색슨모델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대륙모델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노르딕 모델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에스핑-앤더슨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효과	낮음	중간	높음
계층화 수준	높음	중간	낮음
별명과 소속국가	앵글로색슨모델 미국, 호주, 영국	대륙모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딕 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우선 노르딕 모델인 사회민주주의 유형을 살펴보자. 탈상품화를 통해 일정정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만든다. 한편, 민주적 계급투쟁은 노동, 자본, 국가의 세 주체들 간의 타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이 특히 강력했던 곳에서는 포괄적인 '사회적 파트너십'의 체계, 즉 3차 협력적 합의와 이익중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급 및 이익 대표의 포괄적인 체계가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저 '위대한' 사회계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제도화된 행위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조합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합의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이다. 그리고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이다. 시장은 보이는 정치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진다. 한 기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데, 이는 렌-마이더너 모델과 한쌍이다. 즉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연대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게

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다른 하나의 기둥은 보편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다.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에 있어서 정부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를 제공한다. 탈상품화의 영역이 일상생활 전반에 미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불평등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림 5]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국민의 집



이 속의 가족과 개인들은 어떤가? 국민의 집은 모두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한테만 또는 어머니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모두를 고르게 대한다. 따라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남성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직장내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여성의 남성화라고 한다. 한편, 집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만들어진다. 남성의 여성화인데, 돌봄의 책임이 남녀 간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돌봄이 가족만이 아닌 국민의 집에서 담당한다. 육아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이다. 이것이 탈가족화이다. 따라서 국민의 집에서는 부엌과 직장에서 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

자 이제 엄격한 아버지의 자유주의적 복지유형의 집을 지어 보자. 먼저 토양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을 만들어 낸다. 이때 주로 시장에 나간 사람들은 아버지이다. 우리는 이를 브래드 워너라고 부른다. 이 브래드 워너가 가계를 담당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들이 노동시장에 싼 값에 나선다.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해진다. 하지만 이들은 위험에대한 책임이 자신이고, 시장에서서 사회적 임금이 복지를 가져 온다고 믿는다. 이들은 더욱더 자립, 자조, 근면에 몰두한다.

한편, 국가는 시장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 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정책을 실시한다. 이 벽돌은 잔여적 복지라는 토양이 된다. 즉 잔여적 복지는 시장에서 탈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때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복지가 주어진다.

[그림 6] 신자유주의와 연민의 집의 탄생



이 위에 다양한 집들이 만들어진다. 좀더 많이 벌은 사람은 빌딩과 큰 집을 짓고, 좀 못버는 사람들은 하꼬방에서 산다. 양극화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 못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난다. 국가는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때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잔여적 복지라 부른다. 잔여적 복지는 연민을 가지고 못사는 집의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 이처럼 앵글로 색슨 모델은 빈자들을 위한 연민의 집을 짓는다.

이제 조합주의 모델의 국가를 지어보자. 이 집의 토양은 온정적 보수주의와 조합주의이다. 건축가는 온정적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온정주의의 기독교이다. 이들은 표준적인 가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보험이라는 기둥을 세운다. 사회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 즉 브래드 위너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완전고용 상태에 있고 괜찮은 임금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불린다.

[그림 7] 조합주의와 가장의 집



이런 기둥 위에 이제 집들이 들어설 태세이다. 한편에선 온정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위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만든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집일지라도 A, B, C 처럼 최소한의 삶(national minimum)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다니는 직장과 이에 따라 보장성이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가족 간의 격차를 만든다. A, B, C와 D, E, F의 집들은 계층에 따라 집의 크기와 삶의 수준이 다르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이 집속의 여성들은 전일제 주부, 또는 비정규직의 나쁜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히 이 집은 가장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을 위한 사회제도와 가장의 권위가 존중되는 집이다.

## 2) 상이한 실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사회복지는 기존의 방향에 순응하여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 사회복지인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것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길은 자선조직협회의 방식에 문제제기를 한 인보관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기인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등장하여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의 모체가 되었다.

먼저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를 살펴보면 이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농민들은 직업을 찾아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빈민의 문제, 즉 실업, 범죄, 질병, 비위생적인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민간자선단체들이 생겨났으나 자선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활동기관 간의 대립이 발생하였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으로 격차가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훈련받지 못한 담당자들에 의해 자선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공동 노력이 필요하여 자선조직협회가 결성되었다. 한마디로 자선조직협회는 당시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구호단체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다.

이 조직의 의의는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사업기관들의 서비스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구호와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협회는 현존 자선단체들의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하는데 있었다. 자선조직협회의 위원들의 임무는 구제 신청자의 엄격한 조사 및 가정 방문을 통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인보관 운동(Social Settlement Movement)을 살펴보겠다. 한편 이 무렵에 런던에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라는 인보관이 설립되면서 인보관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최초로 설립된 인보관은 바네트 목사에게 의해 1884년 런던시 화이트채플 슬럼 지역에 개관된 토인비 홀이다. 그는 교회 주변 빈곤지역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교인 옥스퍼드대학 학생들과 교회의 청년들에게 교회교육을 통해 구제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요청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틀먼트-Settlement(인보)라 불리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발전되어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이 설립된 것이다. 토인비 홀의 설립목적은 첫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들에게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시킬 것, 둘째, 인보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빈곤자들의 상황과 사회개량의 필요성을 알릴 것, 셋째, 사회문제 보건문제, 그리고 사회입법에 관하여 일반 지역주민과 사회에 관심을 높일 것이었다.

<표 2> 자선조직협회의 인보관 운동 비교

구분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
사회문제의 근원	개인적 속성(자조, 자립의지 박약)	환경적 요소(가정, 직업, 지역사회)
참여자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 부유한 상류계층과 지인	거주자(resident) 교육받은 중류계층
성격	빈민개조 빈민의 역기능 수정 자선을 통한 빈민구제 자선활동의 합리화	사회개량(빈곤실태 파악후 지역복지 활동) 기존제도, 질서 수정, 혁신 신뢰와 협동으로 연대하여 문제해결 주민교육, 문제대처 능력 배양
주된 기능	기존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주민상호 관계 저해요인 제거노력

당시 토인비 홀의 사업내용은 대부분 빈곤자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 활동, 보건문제, 그리고 빈곤자 문제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인비 홀의 영향으로 그 후 몇 년 동안 영국 전역에 100여 개의 인보관이 확산·설립되었으며 그 중 3분의 2는 런던지역에 설립되었다. 초창기 인보관 운동에 참여하던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지역 내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원봉사자로서 빈곤자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시키며 사회개량과 사회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같이 당시 빈곤자들을 위해 사회개량운동을 하던 선구자들이 펼치던 인보관 운동은 영국 각지는 물론 1889년 미국 시카고에 헐 하우스, 1897년에는 일본 동경 간다(神田) 지역에 킹스레이 관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설립되어 나가게 되었다.

자선조직협회의 인보관 운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원인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보았다면 인보관은 환경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접근과 해결방법도 차이가 있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구별하여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을 나누어 지원하는 반면, 인보관 운동

은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기존 사회질서의 잘못된 구조를 비판하며 실용적으로 개혁하려 애쓰는 운동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참여 인력이 방문의 형태를 띠다면, 인보관 운동은 빈민들과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또한 자선조직협회는 주로 상류층이 빈민층을 구제하는 개인적 속성인 반면, 인보관 운동은 환경적 요소들로 인한 필요에 따라 주로 중류층과 대학생 위주로 활동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선조직협회는 자선 구호로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 돕고 나누는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인보관 운동은 상부 상조적이면서도 스스로 자립을 돕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와 정치에 비판적 소리를 내는 운동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위험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한 실천방식과 효과를 발생시켰다. 자선조직협회가 위험의 원인을 개인으로 보고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인보관은 위험의 원인을 환경에 두고, 개인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즉 참여자를 돌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가 돌보는 주체가 될 것인가가 실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3. 사회복지철학의 수렴: 제3의 길과 큰 사회론

이상에서 보듯이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서로 경합해 왔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서 세 모델은 수렴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the Third Way)과 보수당의 큰 사회론(Big Society)이다. 따라서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을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든스에 따르면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이길이다. [그림 2]의 3번과 4번 사이에 존재한다. 사회투자국가로 집약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국가이다. 즉 국가는 “개인들의 선택을 지원하고 교육과 훈련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에게 개방된 기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 발전을 촉진”한다.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량형성 전략(capacity-building), 고용을 통한 자활 등을 자기전략으로 하는 국가이며 그 결과 적극적인 기회의 재분배와 근로의무를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제3의 길의 사회투자국가는 사회복지를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투자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상품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그림 2]의 4번 길(자유주의)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그림 2]의 3번 길(사회민주주의)이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제3의 길([그림 2]의 5번 길)은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또는 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을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시키는데 몰입한다. 이런 점에서 제3의 길은 [그림 2]의 5번 길로

서 4번 길 내에 있다는 것이 본 글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한에 있어서만 국가가 투자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림 2]의 4번 길 내에 존재하면 4번 길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큰 사회론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고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의 현직 수상인 캐머론(D. Cameron)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제3의 길의 향하는 곳은 시장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사회이다. 이 주장은 국가를 통한 탈상품화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혁에도 비켜 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국가에 의존해서 해결하지 말고 사회에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에 의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임파워먼트, 자유, 책임성 등을 강조한다: "일상과, 집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관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게 그들의 대답을 찾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것인데, 영국정부의 엘리트로부터 거리의 남녀로의 권력의 가장 크고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이 재분배이다. 정부의 역할은 큰 사회론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상의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수당은 세 범주에서 6가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 범주, '사회적 기업과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심화시키는 일'을 위해 민간 자원에 의한 큰 사회 자립은행(An independent Big Society Bank) 설립, 사회적 기업의 배양을 시도한다. 두 번째 범주인 근린단체(Neighbourhood Groups)의 형성과 발전을 원조하기 위해 근린보조금(neighbourhood grant)의 지원과 전국공동체조직센터(National Centres for Community Organising)의 창립을 도모한다. 세 번째 범주는 큰 사회 창조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유일한 정부의 서비스(the civil service)를 하나의 시민들의 서비스(a civic service)로 전환하고 국가적 행사로 큰 사회의 날(Big Society Day)를 제정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캐머론의 비전은 '사람을 신뢰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에 있다.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캐머런에 의하면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회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지금은 주로 정부의 손에 있는 기능의 일부를 떠맡을 수 있으며, 시민들도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대처 정부는 이 나라에 일종의 경제적 책임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지금의 과제는 사회적 책임감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 일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탈상품화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두 개의 전략이다. 두 길은 사실상 수렴되고 있다. 이것의 수렴은 같은 물줄기에서 나온 지류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원류는 대처리즘이다. 대처리즘(Thatcherism)은 다시 블레어를 만나 블레처리즘(Blaircherism)으로 세련화된다. 결국 보수당의 당수 카메론은 대처로부터 영감을 얻고 블레어로부터 정치적 기교와 세련됨을 배운다. 즉 카메론의 큰 사회론은 블레처리즘의 보충이고 또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첫째, 모두 계급이 아니라 개인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제3의 길은 계급의 존재와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외면하고 있고, 큰 사회론 역시 계급이 아닌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개인들과 그들의 결사체에 주목한다. 둘째, 두 관점은 모두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양자는 조건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을 피해가기 보다는 이용해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한다. 셋째, 두 사람의 국가의 기능에 대한 유사한 입장이다. 양자는 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국가를 선호한다. 이를 활성화전략이라고 부른다. 이상에서 보듯이 두 이념은 매두사처럼 블레처리즘이라는 동일한 몸통에서 나온 두 머리일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모두 개인의 자발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선용과 상품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의 정치의 틀을 통해 볼 때, 같은 목적과 전략을 블레어는 시장투자국가로, 캐머론은 큰 사회지원국가로 명명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복지국가의 경향은 자신의 이념을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큰 사회론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더 좋고 싼 대안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이타주의와 관대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책임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큰 권력과 정보를 줌으로써 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큰 사회론은 국가도 시장도 아닌 사회에 집중한다.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큰 사회론은 'not state but society'라고 말하면서 'not market'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시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회를 강하게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즉 큰 사회론은 작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엄호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 4. 변화된 환경과 지역사회복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점검

### 1) 환경 및 여건 변화 전망

#### 사회복지는 구체적인 욕구를 먹고 자란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이 위험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욕구를 먹고 자란다. 물론 모든 고통에 대해 집합적 권력인 국가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일 때 개입한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노령사회가 되면서 노동력재생산의 문제가 되자 국가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맥락에서 베버리지는 5가지 고통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표 3> 베버리지의 다섯 가지 거인들과 현대의 복지기둥들

베버리지의 거인들	핵심쟁점	복지기둥
공핍	불충한 수입	사회보장
무위	불충분한 일할 기회	고용
불결	열악한 주거	주거
무지	부적절한 교육기회	교육
질병	보건의료에 대한 제한된 접근	보건의료

출처: Hudson et al., 2010: 33.

그렇다면 여전히 이런 결핍은 정당한가. 어느정도 해결은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문제는 이런 결핍 이외에 또다른 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위험들을 전통적 위험이라고 하고 새로 생겨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서비스 전달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 서비스가 욕구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의 참여 없이 제공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란 그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규모를 결정하는 욕구와 욕구를 관찰할 수 있는 힘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단순히 현금·현물 급여로 대변되는 수당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고되어야 한다. 즉 수당을 넘어서 사회복지를 권리로서 느끼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힘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의 급여는 힘과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힘과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권력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고 권리의 결핍, 사회적 서비스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당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사회복지를 권리로 이해하고 참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의 관련단체들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란 주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고,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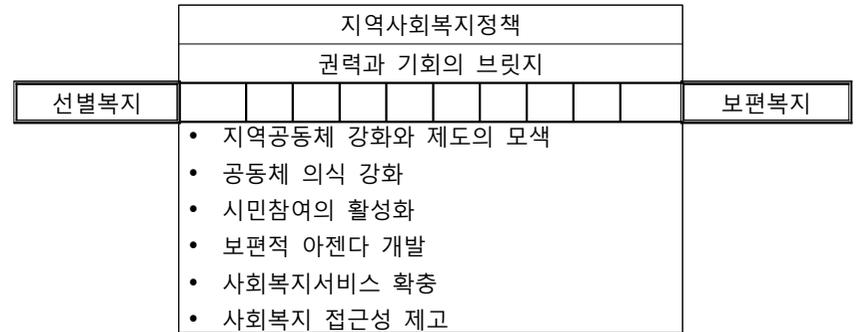
**사회복지란 안녕으로써 통합적인 시민들의 안전지도이다**

사회복지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실천이자 대응체계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녕이다. 한때 '당신은 안녕한가'라는 말이 유행한 것처럼, 안녕은 실업, 질병, 노령, 주거 등의 전통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돌진적 근대화는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많은 구조화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는 점차 넓어져 왔고 그 항목은 추가되어 왔다.

사회복지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규정에 묶여서 이 문제가 사회복지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해서는 안된다. 즉 지역의 사회복지란 이것을 새로운 위험의 목록에 추가하고 이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특히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세월호는 희생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란 권력과 기회의 브릿지를 만들어 시민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이다**

앞선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복지의 위상과 지역사회의 욕구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란 서비스전달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권리로서 참여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욕구를 가진 시민들의 권력과 기회의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란 전통적인 위험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통합적인 안전지도가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복지의 방향은 선별복지에서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편복지로 가는 다리를 놓은 것이어야 하며 이것은 이번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은 물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더 나아가 제도적 설계가 있어야 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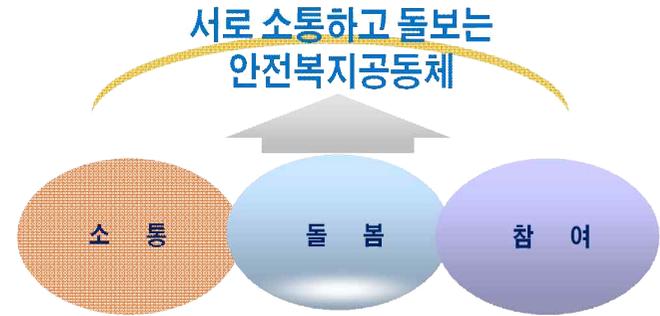
지역사회복지는 철학을 담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대와 같다. 등대는 목표에 대한 길을 비추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전략목표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세부적인 전술들이 핵심 과제이다.

지역복지계획은 앞서 언급한 환경변화와 여건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사회복지에 권력과 기회의 권리를 담을 것인가, 어떻게 사회복지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점증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담을 것인가, 어떻게 사회복지의 지역의 특별한 욕구에 반응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역복지계획은 아래 박스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p><b>1) 비전</b>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p> <p><b>2) 전략목표</b></p> <p>(1)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변화</p> <p>(2)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p> <p>(3)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강화</p>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전복지공동체는 전통적인 위험들을 전제하고 새로운 위험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세월호라는 재난자체가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복지지평의 확대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통과 참여의 인프라를 통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력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복지공동체를 보장하는 전략목표는 소통과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돌봄의 범위와 깊이가 넓고 심화될 수 있는 브리지인 셈이다.

[그림 8] 비전과 전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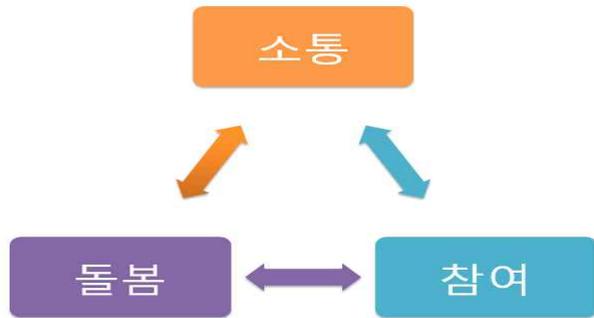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그림8]에서 보는 것처럼 소통과 참여를 통한 돌봄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안전복지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라는 비전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즉 철학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

안전복지공동체는 첫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이웃의 돌봄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라는 비전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이웃의 돌봄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이웃을 돌봄으로써 모두가 안녕을 느끼는 삶의 공동체가 바로 안전복지공동체이다.

그렇다면 소통은 무엇인가? 소통은 대화(communication)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과 이로 인한 의식의 증진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의미와 운영에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participation)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무형의 제도와 안정적인 인적인 관계, 즉 사회복지에 위한 조직화를 의미한다. 특정한 기관, 시설, 단체나 네트워크와 같은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녕을 느끼는 상태와 이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그림 9] 안전복지공동체의 구성요소



이상에서 보듯이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라는 비전은 소통이 모든 인간 행복의 시작이고 그 끝이 돌봄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돌봄은 잔여적 복지뿐만 아니라 제도적 복지를 포괄하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공동체의 동료에 대한 집합적 대응의 일체를 의미한다.

안전복지공동체는 둘째, 새로운 사회복지의 지평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체계'이다. 여기에서 '사회적'이란 '사회가 발생시키는' 즉 사회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지는 위험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사회적이고 또 어떤 것이 개인적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적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이란 사회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라는 정의에서 '공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쟁점이다. 자선단체의 모금이나 자발적인 성금을 '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에서 공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적인 것'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매개하고 주선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수준의 연대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금이기 보다 세금으로 재원이 만들어지고 자선이기 보다 공적인 활동이 된다. 따라서,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국가기구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실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활동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행위인데, 그렇다면 사회적 위험이란 무엇인가. 앞서 사회적 위험의 범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 즉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대적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베버리지의 5대 약 즉 교육, 의료, 질병, 장애, 빈곤 등이었다. 그러나 이 위험들은 시대가 바뀌고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위험이라든지, 노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의 증후들에 사회복지를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 특히 한국사회에서 최근에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나 환경 오염, 치안, 사회적 갈등 등과 같은 위험 앞에서 사회복지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동안 사회복지의 영역은 '잔여적' 수준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즉 전통적 위험조차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평을 넓히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는 '평화복지국가' 논의를 시작하였다. 평화복지국가 논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분단체제를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가 가능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를 사회복지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평화를 통한 복지국가의 확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글은 사회복지가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에 개입해서 사회복지의 정체성, 영역, 실천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 즉 시민의 안녕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과 실천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위험이 체계적으로 제거되기 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험사회>의 저자 올리히 백에 의하면 위험은 전면화되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화'되었다. 또한 이 위험이 특정계층과 계급에게 더 많은 위험의 기회와 더 강력한 위험의 강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험은 계층적이고 계급적이다. 이런 다양한 위험을 그대로 두고 인간은 안녕할 수 있을 것인가.

본 글은 사회복지가 이제 위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관점에서 '안전복지공동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영역으로 위험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위한 실천의 가능성과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위험에 대한 인식, 위험을 방지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를 위한 참여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과 전달 시스템의 형성 등에 있다. 이런 점에서 안전복지공동체는 서비스와 그 전달에 초점을 두지만 이것은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안전복지공동체는 '소통과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즉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 원리, 관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전복지공동체 개념은 사회복지를 단순히 현물, 현금, 바우처의 전달이 아니라, 참여, 권력, 기회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보아야 한다.

정치학에서 정책은 '가치의 권위적 분배'임. 이때 가치는 단순히 현물과 현금을 의미하지 않고, 인정, 위신, 권력, 문화 등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가치를 포괄함. '권위적'이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과 대비된다. 즉 권위주의적이란 특정 권력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를 무력과 위협으로 억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권위적'이라는 것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안전복지공동체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가치분배에 동의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때 안전의 정의, 안전의 책임, 안전의 방법 등에 대

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의 권한 및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안전복지공동체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해 집합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실천, 체계이다. 정리하자면, 안전복지공동체는 첫째,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안전이라는 지평으로 확장하고 사회복지의 인식과 실천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을 소통과 참여라는 인간행위를 통해 이해하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사회복지가 정치와 사회적 합의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안전복지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 개입하려고 한다. 셋째, 안전복지공동체는 현재 재난에 처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도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안전복지공동체는 세월호 비극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 세 가지 전략목표

첫째, 소통을 통한 복지인식 변화이다. 소통은 대화이다. 대화는 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 비전, 방향 즉 '이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염원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하고 상상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복지공동체라는 이상이 일상(현실, 정책)이 되는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전복지공동체에 대한 의식의 공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통은 다음과 같은 담론과 친화적이다: 공론장, 교육, 학습, 토론, 이상의 공유, 복지의식 등.

안전복지공동체는 제도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인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상상을 위한 소통의 행위를 제도화, 문화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계획은 복지인식의 변화를 위한 소통의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둘째, 참여를 통한 주민조직화이다. 사회복지 담론은 그 안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대응체계에 대한 정의와 제도화를 담고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참여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문제들에 권리를 갖고 참여함으로써 안전복지공동체가 증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담론이다. 이 말은 다음의 담론과 친화적이다(권력과 기회의 증진, 시민참여, 참여예산제 등).

이처럼 안전복지공동체는 권리의식을 갖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참여의 지속가능한 실천, 행위, 제도를 향한 전략을 담아야 하고 이것은 네트워크, 관련센터, 제도들 간의 연계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강화이다. 안전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소통과 참

여를 통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 우선 돌봄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안전복지공동체의 돌봄의 전략은 제도적 복지를 향한 돌봄이다. 이 말은 돌봄이 잔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잔여적인 것은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즉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의미한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공적인 개입을 의미하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이고 선별의 과정에서 낙인감(stigma)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국민의 기본선으로 정하고 의료, 문화, 교육, 주거 등의 기본선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언급된다.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강화 전략은 현재 잔여적 복지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가 서서히 제도적 복지의 기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바람과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과 잔여적 복지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잔여적 복지는 제도적 복지의 다리를 통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안전복지공동체는 한국사회에서 잔여적 복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의 안전복지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 없이 안전복지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그림 10] 전략목표 상관성



돌봄의 안전복지공동체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적 복지를 소통을 통해 확립해가야 한다. 제도적 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소통은 이런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돌봄과 소통을 통해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안전복지공동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준비해 가야 한다. 안전복지공동체는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의 기반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안전복지공동체가 지향하는 돌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말 그대로 위험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돌봄이다. 이때 돌봄은 단순히 잔여적 복지에서 제공하는 현물과 현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서서 사회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및 조정, 사회안전망 구축, 마을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돌봄이 단순히 현물과 현금을 제도적 수준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적 인적, 관계적, 네트워크적 기반을 통해 돌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상의 전략목표들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소통, 참여, 돌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적이다. 만약 소통과 참여가 없는 돌봄이라면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소통과 참여는 권리의 주체들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여 가치를 나누는 행위이다. 소통과 참여 또한 상호보완적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를 규정하고 행위는 또다시 제도의 성격과 형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통은 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행위이고, 이 행위의 결과 탄생한 참여의 문화, 인프라, 제도는 또다시 소통의 주체, 방식,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소통과 참여는 상호관계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11] 지역복지의 비전과 전략



## 5.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방향

### 1)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특징

한국의 사회복지지는 이상에서 분류한 복지국가의 이념과 유형에서 어떤 입장에서 있는가? 한국은 그동안 사회민주주의의 국민의 집을 상상하지 못했다. 복지국가유형론에서 볼 때, 한국은 유교주의 사회복지국가, 발전주의 사회복지국가 등 제4의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잔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은 철학이 선별주의이고 권력관계가 복지동맹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시민참여가 취약한 가운데 관주로도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지는 대상중심, 이벤트성, 단기적 사업, 취약계층 중심, 시설중심 및 기관중심, 분절적·파편적 서비스전달체계, 직접서비스 중심, 사후구호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표 3> 참조).

<표 4> 지역의 사회복지 방향과 내용

범주	방향	내용
철학	선별주의	시혜적, 자선, 잔여주의
담론	근대화, 반공주의	선성장 후분배, 산업전사,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정책결정 방식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참여 조정과 협의	매우 제한적
	시스템의 취약성	로드맵과 컨트롤타워의 취약성
	관주도	정책결정이나 집행방식이 행정주도 시민참여의 부족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대상 중심	아동, 노인, 여성 등 영역별 구분→단편적 단순서비스 제공
	이벤트성, 단기적	대체적, 일시적, 응급구호적 방식
	취약계층 중심	선별과 자격심사 과정에서 stigma(낙인, 굴욕감) 발생
	시설중심, 기관 중심	복지 정책이 시설과 기관운영에 집중됨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전달	기관별, 시설별, 단체별로 개별 조직이 한정된 서비스 전달
	직접서비스 중심	단순서비스 전달
	사후 구호(치료) 방식	poverty line에 들어와야 서비스 제공

사후구호적 개입은 환자가 중병이 든 이후에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기 때문에 효과

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병이 걸리기 전에 개입하는, 즉 예방과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앙정부보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지역복지의 현실은 1997년도 이후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식은 노령, 빈곤 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선별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시민들의 권리로 자각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권한은 중앙 집중적인 경향을 보였다. 지역복지차원의 거버넌스는 형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력구조(power relations)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표 4>는 사회복지의 현실과 대안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중심, 단기적 사업, 취약계층 중심, 시설중심, 분절적·파편적 서비스전달체계, 직접서비스 중심, 사후구호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5>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

범주	현실	대안	내용
철학과 의식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제도적 복지의식을 위한 기회와 공유장치
참여와 거버넌스	중앙집중	지방분권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관주도	거버넌스	정책결정이나 집행은 시민참여 방식
사회복지 제도과 서비스	대상 중심	사건중심	사건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하고 포괄적 접근
	단기적 사업	중·장기적 사업	근본적 거시적 시각을 통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 사업
	취약계층 중심	일반주민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제도
	시설중심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전달	총체적·체계적 서비스 전달	개인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중심	인프라 구축	복지기반구축, 대상자 역량강화, 지역주민 인식개선 등
사후 구호(치료) 방식	예방적 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등 문제예방 활동, 조기 개입 강화	

향후 지역복지의 사건중심의 복지정책, 중·장기적인 사업,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지역사회중심의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총체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직접서비스 중심에서 지역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방적, 조기개입의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본 글은 이상의 지역복지 현실이 제도적인 사회복지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 제도도입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복지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복지의식의 차원이 취약했다. 따라서 본 글은 지역복지계획이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되, 그 전제조건인 지역주민들의 세력화, 즉 참여와 의식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2) 가능성과 한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복협)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5년 8월 부터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복협은 사회복지정책을 핵심주제로 한 로컬 거버넌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복협이 지역,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형성되고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지복협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보건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대표, 보건의료분야, 그리고 학계와 공익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지복협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복협의 성격은 한마디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향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지복협은 지역의 주요한 행위자들의 참여에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형태가 지복협의 존재조건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거버넌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복협은 지역사회문제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고민과 욕구, 즉 사회복지를 주요 아젠다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복협은 생래적으로 유사 거버넌스가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복협은 사회복지를 아젠다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자들이 주로 참여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예산권을 시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는 시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만날 수 없다. 즉 사회복지계가 시정부에 비해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테이블에 동석했다해도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복협이 유사거버넌스에 가깝기 보다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힘의 불균형의 극복, 즉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시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사회복지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점차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조건이 동일하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시민이 원하는 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갈등적 거버넌스나, 정책결정과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유사 거버넌스에 비해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근접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결과가 원했던 결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결정 방식에서도 다른 거버넌스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협의의 장이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무시나 배제보다는 차이를 존중하고 협의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비해 유사거버넌스는 형식적인 토론이 있을 뿐이며 참여단체는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다. 한편 갈등적 거버넌스 역시 힘과 대립을 통해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론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궁극적인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시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제도주의적 복지를 위한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복협이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획일적, 통제 중심적이 아닌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이용,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NGO, 사회복지 단체, 시민단체 등과 개인 자격의 자원 봉사자 등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방식은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의 방식이며, 상이한 의견을 드러내고 협의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그런데 지복협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다양한 참여자들의 대화와 토론의 방식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복협의의 실질적인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행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의 일방적 협의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식적이고 제도화될 때 지속 가능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제

도화의 경우 지복협이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조례제정과 예산배정 그리고 충분한 전담인력을 전제한다.

마지막으로 지복협이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그 욕구를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사회적 문제들, 즉 노령, 장애,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소수자의 권리, 불평등의 문제 등으로 아젠다를 더욱 확장하여 이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재정적 틀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영향력의 확대 이외에 지복협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토론과 비판의 과정 속에 자신을 위치지워야 한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순히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충실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결과에 순응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복협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아젠다를 충분한 토론과 협의의 그리고 때론 협상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대로 투명하게 시민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복협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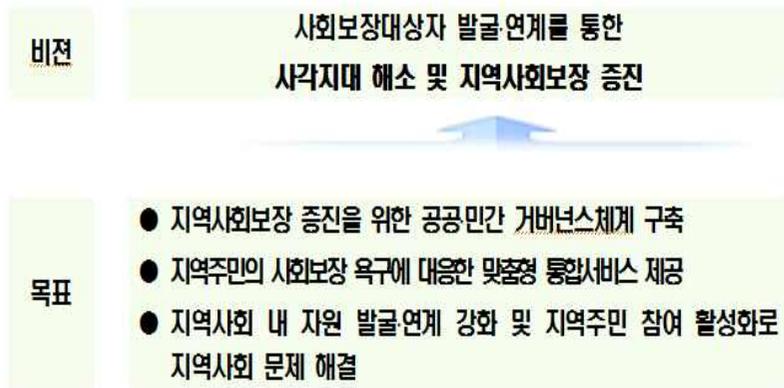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의 변경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5>에서 보듯이 핵심적인 것은 다루는 범주가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과 읍면동 단위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표 6>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변화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15.1.1. ~ 6.30.)	지역사회보장협의체('15.7.1.부터 시행)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범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 확대
연계 체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협의체 기능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심의·자문/연계·협력 기능, 심의·자문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경우, 기능이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때, 위원회는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되고, 위원임기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다.

[그림 12] 사회보장협의체의 비전과 목표



사회보장협의체는 비전이 사회보장대상자의 발굴을 통해 사각지대해소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그 목표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보면 복지대상자 발굴 사례가 있다. 즉 시기는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할 것이고, 주체는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를 들고 있다:

- <참고 : 발굴체계 사례 >**
- 부산 북구, 서울 강북구 :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 민간자원으로 독거노인에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
  - 충남 천안시 : 맞춤형 집배 모니터링 사업
    - 집배체계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전남 순천시 : 소망소리함
    - 관공서에 소망소리함을 설치,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

방법도 제시하는데,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모범 사례를 들고 있다:

- <참고 : 취약계층 일제조사 사례>**
- 서울 서대문구 : 지역주민 전수조사
    - 복지통장이 불필요한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를 조사
  - 서울 노원구 : 남성 독거노인 전수조사, 법정 차상위 전수조사
  - 경기 오산시 : 동절기 단전가구 현장조사, 취약계층 집중 일제조사
    - 창고.지하철 등 거주자, 찜질방.고시원 등 장기 거주자 및 아동 동반 투숙자 등
  - 부산 서구 : 한부모 가정 전수조사
  - 대구 서구 : 행복올타리사업(50세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 광주 광산구 :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 194천 가구 전세대 조사

보고서는 중점 발굴대상인 경우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 <참고 :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발굴 후 처리방법으로 보고서는 “복지대상자 발굴(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확인 및 처리(필요시 협의체 회의 후 지원연계)”를 제시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점은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비전으로 삼고 매진해야 할 영역인가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야말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이고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의 책임이 동장과 지역주민으로 내려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책임을 민간과 지역으로 떠넘기고 권한은 약화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즉 주민생활지원이 정부의 고유임무인데, 사회보장을 지역사회로 넘기고, 동복지협의체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기능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낸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말은 사회보장인데,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

## 6. 실천전략: 국가만들기인가 사회만들기인가?

### 1)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와 그가 일하는 사회복지관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관의 위상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있다:

<국가+정치사회> ⇔ <사회복지관> ⇔ <시민사회>.

여기에서 정치사회는 의회를 포함한 일련의 정치세계를 의미하는 반면 국가는 사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한편 시민사회는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시민, 주민, 국민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관은 국가 또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 사회복지관은 시민사회의 욕구를 조직하고, 이것을 국가를 통해 관철하고자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민사회의 욕구에 맞게 적용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우편배달부처럼 단순한 전달자(Messenger)가 아닌 중재자(Mediator)이어야 한다. 전달자란 우편 배달부처럼 단순히 어떤 정보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달자의 임무는 배달사고 없이 충실하게 물건이나 의도를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면 안된다. 전달자로서의 복지관은 국가와 정치사회의 얘기를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반대로 시민사회의 욕구를 조직하고 이것을 국가와 정치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자란 양자간의 의견, 욕구, 목표, 행위양식들에 개입해서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양쪽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서 자기의 결정권과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재자로서의 복지관은 시민사회의 욕구를 잘 정리하고 가공해서 국가+정치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정치사회의 요구를 시민사회의 상황에 맞게 가공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복지관은 민간기관으로서 현장의 욕구를 잘 정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한편, 국가와 정치사회의 의도와 목표를 잘 소화해서 현장에 맞게 실현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재자로서의 사회복지관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능동적 행위자를 의미한다. 중재자로서의 복지관의 실천은 국가+정치사회나 시민사회의 성격과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관이 단순히 수동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갖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안정책을 형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가정책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국가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시민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 소속의 일꾼이라는 제한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일원 또는 현장에 가 있는 국가정책의 실현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관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지친 노새, 순교자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낮은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무엇인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의 현실은 너무 많은 짐으로 특징 지워진다. 우선 한국의 사회복지의 잔여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점과 주요 행위자가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다는 점, 그리고 복지의식과 이념이 한국적 자유주의(반공주의+발전주의)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중재자보다는 정부의 '통치'를 받는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도주의 복지를 실천하기 보다는 잔여주의적 복지를 이행하는데 전력을 다해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중앙집중, 관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이 되어 왔다.

이처럼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잔여적 복지를 실천하는 국가+정치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관의 실천은 일회성, 단기적인 사업(대체적, 보충적, 임시적, 일시적 지원-비상대책)에 머물고, 대상(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중심일 수밖에 없었고, 분절적·파편적 서비스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프라보다는 직접서비스에 치중하고,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친 노새, 순교자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자체적인 내부 문제도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지역사회 중심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기관·시설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사람, 부서, 기관 등이 '각자 따

로 열심히'는 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은 자신의 위상, 정체성, 의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길 잃고 도전자 많은 험난한 여정'에 있어 왔고, 잔여적 복지를 위한 제한적인 재정과 지원을 가지면서도 지역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전달자로서 '한국사회 열악한 복지현실을 홀로 지고 가는 지친 노새'와 같은 모습을 보여왔다.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위해 봉사하라'는 사회와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는 순교자와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왔다.

한편, 사회복지관의 낮은 정치적 위상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정치적 위치는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최고관리자의 경우 지역사회의 하위급 공무원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철학과 구조에 기인한다. 복지를 보완적, 대체적, 부수적으로 보는 시각과 선별주의적 복지구조에서 복지관은 한 사회의 중추적 기관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관리자는 하나의 의견그룹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종합복지관은 현재 클라이언트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관리감독하는 방식 등에도 기인한다. 복지관은 '지역공동체' 조직화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 전달자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사이 종합복지관은 단종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에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의 경우 민원처리실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관)는 이제 새로운 자신의 목표와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철학과 방향에 기반하여 실천과 제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일정한 철학과 태도로서의 의식, 관련주체들의 행위로서의 참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제도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어떻게 권리로 복지를 인식하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의식과 관련하여, 차이를 차별이나 우열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의식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의식을 공동체 구성원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행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복지인식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교육, 공동체 경험의 기회 확대(자원봉사, 접속의 기회확대-공유장치), (어린이) 도서관 확충, 구립도서관의 시민의식 강좌 개설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떻게 참여, 행동하고, 실천하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 속에서 튼튼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는 본질적으로 참여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지역사회의 일은 물론이고 자신과 관련된 사회복지관련의 정책의 형성이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참여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협치시스템이 취약성에도 원인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대안을 주민참여기

회의 확대 (지역조직화-시민조직화; 시민참여 공유장치의 확대), 거버넌스(협치)의 내실화(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조직화-사회복지네트워크), 자원봉사, 자조모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로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사회권(제도적 복지기반)을 향유하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의 실질화는 보충적·선별적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social right)을 확보하는데 있다. 사회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적·정신적인 것을 포괄한다. 사회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복지는 상당히 잔여적이고 선별주의적이다. 인천의 사회복지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취약하고 특히 계양구의 사회복지에는 인천의 다른 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회권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의 체계화(네트워크, 효율적 운영)와 복지자원의 확충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와 복지시설의 확충; 공급기반확충,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동체'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당당하고"라는 용어는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또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권리이다. 한편 "풍요로운"이라는 의미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태가 넉넉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위험에 처한 사람 누구에게나 사회안전망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도적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토대 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될 때 가능하다.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 국가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글은 현재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사회복지에는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으로 가고 있고, 한국의 사회복지에는 잔여주의와 큰 사회론의 맥락에서 구조화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버넌스의 기능보다는 사례관리의 연결망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본다. 이는 인간간위의 평등권이라는 사회권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주민참여를 통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데도 한계를 갖게 만들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잔여적복지의 사회서비스전달이라는 수당에만 몰입해 온 한국의 사회복지에는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고, 동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 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의미와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복지관과 사회복지사의 철학과 위상 더 나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철학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는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위한 거버넌스이자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즉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복지국가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입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토론과 비판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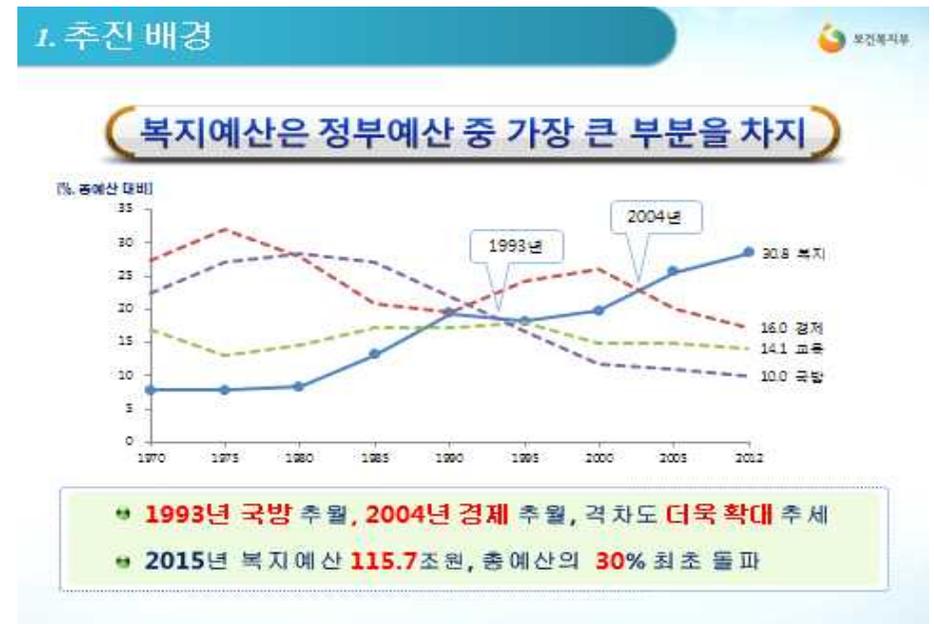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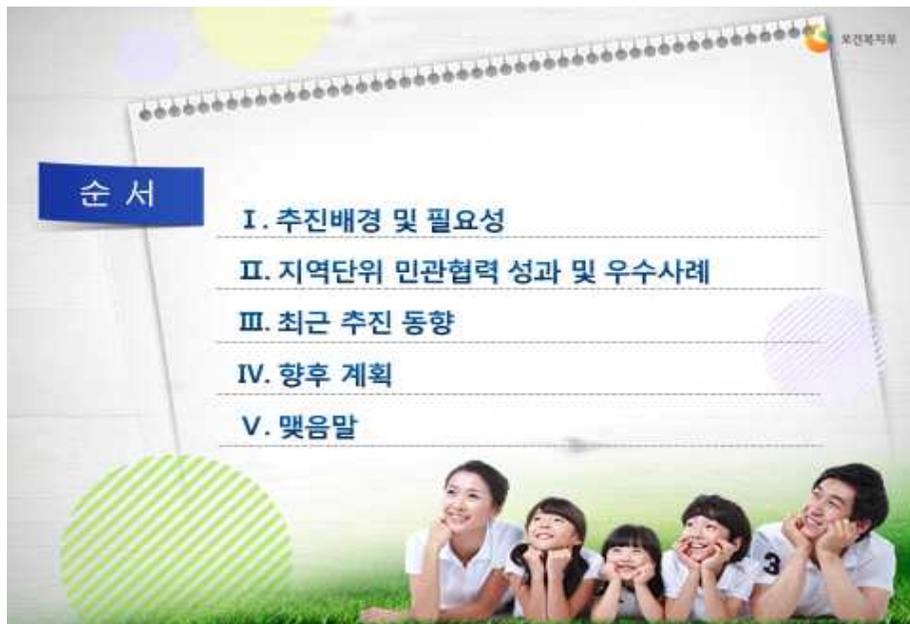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의 철학과 실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철학은 철학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상식, 윤리, 진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이 다르면 정책과 제도가 다르다. 위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철학에 따라 달라진 모습을 그려봤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철학이 다르면 실천이 다르고 실천이 다르면 공동체, 국가, 마을이 다르게 때문이다. 물론 다른 마을과 국가 속의 사람들의 삶은 매우 다르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국가만들기에 대한 선행없이 마을만들기와 사례발굴로 가면 안된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의체는 사례발굴을 넘어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이 관점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권력관계를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나의 이상(철학)이 일상(국가, 실천)이 되도록 상상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에서 언급한 것처럼 돌봄 이전에 소통과 참여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의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강의 I

##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 동향

정숙희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1 복지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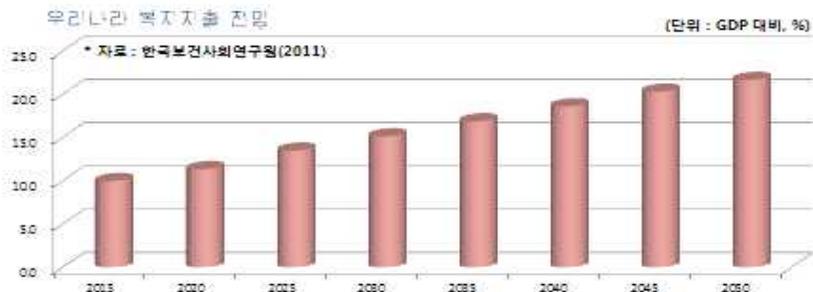
GDP대비 복지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 단순 비교시 **OECD평균의 40%** (美·日の 1/2, 佛·獨의 1/3) 수준
- 고령화 정도와 연금제도 성숙도 감안시 **선진국 60~80%** 수준
  - 연금제도 성숙도를 반영하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4%도 상승

1 복지 재정

그러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



- 현 추세 유지시 **2040년 미국, 2050년 OECD평균수준** 도달
- 복지지출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에 기인
  - 고령화사회(7%) → 고령사회(14%) 도달기간 : ♀115년, ♂78년, 총40년, ♀24년, ♂17년

2 복지 제도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 수혜자는 부족

<p><b>1차 사회안전망</b> (5대 사회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 ('77년 시행, '89년 전국민 확대)</li> <li>- 국민연금 ('88년 시행, '93년 전국민 확대)</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 ('64년 시행, '00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li> <li>- 고용보험 ('95년 도입,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li> </ul>
<p><b>2차 사회안전망</b> (사회복지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시행)</li> <li>-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07년 전자바우처 시행)</li> </ul>
<p><b>3차 사회안전망</b> (공공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제도 ('06년 시행)</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00년 시행)</li> <li>- 의료급여제도 ('77년 시행)</li> <li>- 기초노령연금('08~'14년), 기초연금('14년 시행)</li> <li>- 장애인연금('10년 시행)</li> </ul>

- 비교적 단기간에 대상별,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제도 도입
- 다만, 많은 복지제도가 수혜 범위와 지원폭 미성숙
  - [사례] 46개 아동지원사업 중 22개 사업이 대상자 1% 미만

3 당면 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

<p><b>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b></p> <p>생활고 비관 세 모녀 동년자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p> <p>생활고 40대男, 극단 선택... 높은 복지 문턱</p> <p>경기도 광주서 세 가족 자살... '밝은 아이였는데'</p>	<p><b>복지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b></p> <p>고령자... 건강 관리 어렵다.</p> <p>개인의치 마시고</p>
---	---

###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칸막이로 인한 국민불편과 낮은 체감도



복지갈때기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 복지사업 증가 및 기준 복잡
- 복지 인력 부족
- 국민들은 통합서비스 요구

### 3. 민관협력 활성화 필요성

공공의 힘만으로 복지문제 해결에 한계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 복지욕구의 다양화
- 맞춤형 복지에 대한 기대의 상승
- 제한된 자원의 위협
- 주민 참여욕구의 상승



### 1. 지역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성과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구축

- 복지동장, 민관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
- 주민 전수조사 또는 취약계층 전수조사(옥탑방, 반지하방, 고시원 거주자 등)
- 1:1 결연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 공공재정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즉시성이 높은 민간자원 확보
- 자원발굴 과정에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강화 효과
- 월급결전 모으기, 1004운동, "공유데이" 등

#### 관련 정보 및 지식축적,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 복지중보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복지리더 양성
- 지역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등으로 근거에 기반한 복지사업 토대 마련
- 지역복지자원 전수조사, 지역주민 욕구조사, 복지제도 모니터링,
- 주민 복지 아카데미, 찾아가는 주민복지학교, 지역복지 아카데미 등

##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 서울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북지협의회**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제과)

**복지통장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제7조제1항제10호)

**구 성**

- ① (인원) 동별 20~30명 내외(동장 등 공무원 포함), 총 20개동 451명(14.5동)
- ② (자격)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 실천의 의지가 있는 주민, 종교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등
- ③ (방법)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동장이 위촉(위원장은 복지위원, 구청장 위촉)

**역할 및 임무**

- ① (사각지대발굴지원) 위기가정 발굴, 복지제도 신청안내, 서비스연계 등
- ② (지역보호체계구축) 민관방문조사단으로 대상자와 1:1연계 및 모니터링
- ③ (자원발굴) 필요자원 및 부족자원 발굴 육성, 동 지역자원목록 DB
- ④ (지역실태조사) 지역주민 욕구 및 현안, 취약계층 실태, 지역자원 등
- ⑤ (기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주사례관리자 지정 등 사례관리지원

##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 광주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북지협의체**  
(투게더광산 동위원회)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복지통장(복지매니저)**  
(광산구 통반 설치조례 제7조제11호)

**광산 복지인드라망**

**구 성**

- <동북지협의체>
  - ① (인원) 21개동 총 424명(14.5동)
  - ② (자격) 지역과 나눔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 ③ (방법) 동위원장이 위촉
- <인드라망>
  - ① (인원) 구 추진단 202명, 21개동 2,157명
  - ② (자격) 지역과 나눔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북지협의체, "좋은 이웃들" 참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민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새마을 부녀회 등

**역할 및 임무**

- <동북지협의체>
  - 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② 나눔문화 장려
  - ③ 마을활동, 지역주민 복지 조직화
  - ④ 자원발굴 및 연계활동 등
- <인드라망>
  -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 ② 나눔을 통해 직접 이웃을 지원
  - ③ 지역자원 발굴 및 복지정보 연계
  - \* 이웃이 이웃을 살리고, 돌보고, 살리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방문 마을차지도 협회)

##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 전북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연대**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읍면별 20명 이상(278명), \* 일부수 봉사직

**희망지기**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  
 \* 복지위원으로 위촉(106명), 월 20만원 수당 지급

**이장 및 적십자봉사단 등 활용**

**구 성**

- <자원연대>
  - ① (인원) 군 조직 20~30명, 읍면 20명 이상 총 278명
  - ② (자격)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이고 부원을 할 하는 사람
  - ③ (방법) 읍면별 추천, 군수가 위촉
- <희망지기>
  - ① (인원) 읍면 법정리당 1명(1인당 200~450가구 범위 내에서 임명), 총 106명
  - ② (자격)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관련 학식 경력이 풍부한 자 등
  - ③ (방법) 지역주민 중 선별

**역할 및 임무**

- <자원연대>
  -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관리
  - ②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및 민간기관 사례관리 시 자원 지원
- <희망지기>
  - ① 복지위원 직무 외에 매일 3가구 이상 담당지역 순회조사, 상담 및 보고
  - ② 사례관리 사후관리, 자원봉사활동 장려

## 2. 지역단위 민관협력 우수사례

### 인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북지협의회**  
**동북지위원회**  
(동북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이행복한재단**

**통장활용**  
(조례 없이 통장 교육 및 협조요청)

**행복마실봉사단**

**구 성**

- ①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 15명 내외(동장이 공동위원장), 총 19개동 254명(14.5동)
- ② (자격)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설의 대표자, 전문가, 교사 또는 대학교수, 종교단체 대표, 기술계 대표자 등(총(하)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③ (방법)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역할 및 임무**

- ① (사각지대발굴지원) 위기가정 발굴, 복지제도 신청안내, 서비스연계 등
- ② (복지자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액 정기기부자 집중 발굴
- ③ (복지대상자 지원) 동북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동북지위원회에서 발굴한 지원하거나 그 외 관내 복지 자원 연계)
- ④ (지역특화사업) 지역의 공동육육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 3. 민관협력 활성화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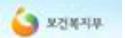
민관협력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의 주도하에 일반주민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장</li> <li>초기 공공의 선제적·적극적 조장 필요, 공공-민간의 핵심인을 필요</li> </ul>
민관협력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복지사업 시행이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에서 시작</li> <li>이후 민간자원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민관협력"로 발전</li> </ul>
민관협력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개인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바탕으로 한 협력에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협의체, 복지재단 등)</li> </ul>
지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체결, 조례 마련 등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li> <li>지속성은 민관협력의 성과를 좌우하는 신뢰성 확보에도 중요한요소</li> </ul>
민관협력의 물리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의 범위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닌 마을단위로 축소되는 경향</li> <li>생활공동체 내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장점</li> </ul>
신뢰형성이 관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신뢰형성은 민관협력의 전제이자 핵심 성공요인</li> <li>신뢰는 물리적 접촉, 공유 정보, 협업시간, 권한 공유범위 등대로 형성</li> </ul>



### 3 민관협력 활성화 성공요인



### 1. 그간 추진 경과



#### 그간 추진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14.5월) 수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14.7월)  
-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시행
-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14.10개소 → ‘15년 40개소)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14.12월) 시행(‘15.7월)

## 1. 그간 추진 경과



### 그간 추진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14.5월) 수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14.7월)
  -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행
-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14.10개소 → ‘15년 40개소)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14.12월) 시행(‘15.7월)

## 2.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 복지통(이)장

-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도록 통(이)장 임무에 포함
- ▶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이)장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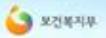
### 읍면동 민관협의체

- 통(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읍면동 당 10~40\*\*으로 구성되어 지역자원 발굴 등에 활용

\* 통(이)장, 종교기관·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복지위원 등 활용  
 \*\* 지역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기존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안착

## 1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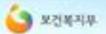


### 227개 시군구 복지통(이)장/협의체 활용 중

### 추진 실적

- 총 223개 시군구(97.4%) 읍면동에 민관협의체 구성
  - 총 3,633개 읍면동, 지역주민·공무원 68천명 참여
  - 복지협의체, 복지위원회 등 형태로 구성
  - ‘14년 복지사각지대 95천가구, 민간자원 135억원 발굴
- 총 205개 시군구에서 복지통(이)장제 시행
  - 참여 인원 약 84천명(전체 이통장 94천명)
  - ‘14년 복지사각지대 78천가구, 민간자원 94억원 발굴

## 3.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 지역공동체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지원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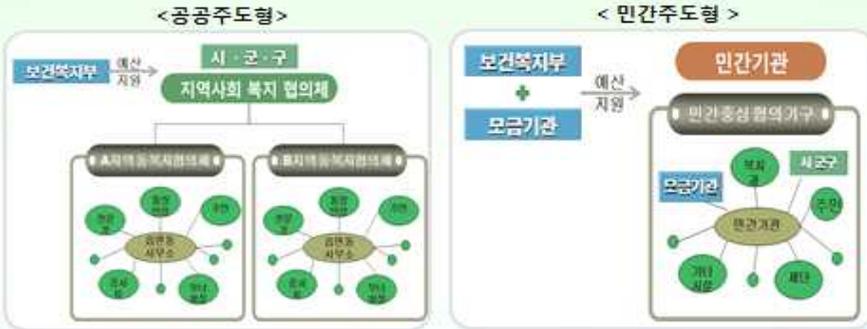
시행 지역	서울 성동구, 광주 북구, 경기 남양주시*, 충남 서천군, 경북 김천시	서울 마포구(성산종합복지관), 서울 금천구(가산종합복지관), 광주 광산구*(광산나눔문화재단), 경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경기 시흥시(작은자리복지관)
-------	---	---

- 경과 : 사업 지역 선정(5월), 민관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 추진(6~12월)

\* 담당자 교육(7월, 11월), 현장방문(8월, 9월, 11월), 사업평가(11월)

### 14년도 사업 내용

- 주요내용 : 공공(주민센터) 또는 민간(복지관, 민간재단)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시행



### 추진 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 2,742가구
  - 공공부문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지 불명자, 은둔형 외톨이 등 발굴 성과

<지역별 대상자 발굴 현황(가구)>

공공주도형	소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1,254	637	194	30	110	283

민간주도형	소계	F 지역	G 지역	H 지역	I 지역	J 지역
	1,488	609	53	356	132	338

-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배00(남, 74세)에 1년
  - 25년 전 사고로 바깥출입 곤란, 우울증, 첫째 아들의 이혼에 따른 손자 양육 부담
  -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으로 병간호 부담 완화 및 정서적 외로움 경감, 손자 드림스타트 및 후원금 연계로 교육비 부담 완화

### 추진 실적

- 민간자원 발굴 총 850백만원 규모
    - 지역주민의 소액기부 활성화로 다양한 자원 발굴, 나눔문화 확산
- <지역별 자원 발굴 현황(천원)>

공공주도형	소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614,319	101,506	20,960	17,835	16,260	457,758

민간주도형	소계	F 지역	G 지역	H 지역	I 지역	J 지역
	236,671	41,691	10,777	90,338	44,626	49,239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공유데이'

- 관내 미용실, 음식점, 한의원, 정육점 등 자영업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 → 저소득 가구에 외식기회 제공, 혼자 손주 4명을 양육하는 할아버지 가구에 월2회 삼겹살 제공 등

### 추진 실적

- 지역보호체계 강화 :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독감 우울증 등을 이웃과의 관계 형성으로 극복
- 지역특화사업 발굴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독거노인-초등학교 봉사동아리 연계

- 복지협의체 위원인 초등학교 교육전문가 주선으로 관내 독거어르신과 초등학교 봉사동아리를 연계, 상호 심리·정서적지지

#### <충남 서천군> 마산면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 농어촌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 승차장까지 40분 이상 도보 이동 필요 → 마산면 협의체가 어르신들 진료를 위한 출타 시 택시비 지원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천명 추가 확충에 따른 읍면동 복지서비스 강화로 전체 읍면동 주요기능으로 확산

#### 4.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추진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수립(14.5월)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마련(14.10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14.12월) 시행(15.7월~)

##### 법률 주요내용

##### ▶ 민관협력의 기반 강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정(제41조제2항제5호 등)  
민관협력 노력의무 및 지원근거 마련(제14조)

##### ▶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반 강화

복지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의무(제10조)  
단전·단수 가구 등 정보공유 협조요청 및 처리근거(제11조 및 제12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제13조)



#### 1.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 현장 밀착형 전달체계로 복지체감도 제고

상담서비스	• 신청·내방민원처리 중심	▶	심층상담 및 방문상담 활성화 대상자별 욕구 확인
사례관리	• 단순 서비스 연계만 • 사례관리는 시군구 의뢰	▶	읍면동 단위 사례관리 본격 실시로 위기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 초보적 네트워킹 단계	▶	복지동(이)장협의체 활성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 등 다층적 발굴체계 구축
복지-보건-고용 연계	• 서비스 별 지원기관 각각 방문 (보건소, 일자리센터 등)	▶	정신보건복지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로 원스탑 통합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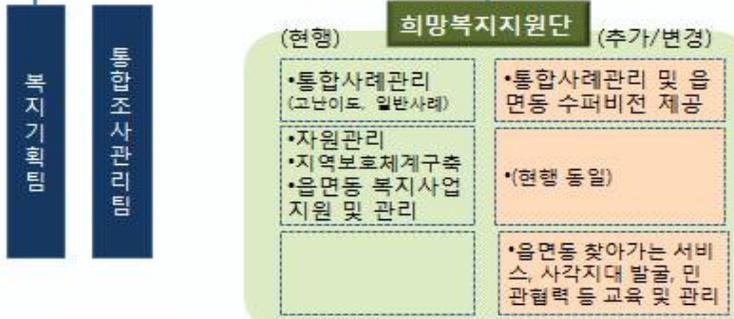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확대

◀ 복지공무원 6천명 추가확충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 강화

00구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 '14.6 ~ '15.12]

○ (추진전략) 기능보강 전제하에 민간 전문인력\* 등 추가투입 복지서비스 심층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대상)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인구규모, 저소득밀집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시범사업 지역 선정('14년 14개소 → '15년 15개소)

' 14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성과[1차년도]

○ (상담) 신규배치된 민간인력 등 활용, 총 상담실적 전년대비 98% 증가

\* '13년 550건/월 → '14년 1,087건

○ (사례관리) 적극적인 사례발굴로 의뢰건수 시범사업 전 대비 200% 이상 증가

2.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구분	'14년도(1차년도)	'15년도(2차년도)
사업 지역	•10개소 * 공공주도형 5, 민간주도형 5	•40개소 * 공공주도형 30, 민간주도형 10
기간	•6월-12월(7개월)	•1월-12월(12개월) * 추가지역은 3월-12월(10개월)
주요 내용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 자원발굴에 중점	•신규 :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 자원발굴에 중점 •기존 : 지역의제 설정, 민관 공동 문제해결 등 거버넌스 구축 유도
사업 운영 지원	•교육, 워크샵 : 공공주도형만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 전 지역 총 20회 실시	•교육, 워크샵 : 전 사업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 지역 간 멘토링 중심으로 추진 * 기존지역은 자체 관리역량강화, 신규지역은 1차년도 사업 능력추진수에 준함
예산	•개소당 20백만원 * 민간주도형 개소당 30백만원 추가지원	•개소당 20백만원 * 민간주도형 기존지역은 개소당 60백만원 / 신규지역은 개소당 40백만원 추가지원

## 2015년도 사업 수행 지역

- 공공주도형 30개소, 민간주도형 10개소
  - 공공주도형 시도별 1~2개소 추가, 전국 확산 추진
  - 민간주도형은 1차년도 수도권 집중된 점을 보완, 농어촌, 중소도시 위주로 추가 선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공공주도형	은평구 동작구 성동구	서구 래운대구	동서구	서구	서구 북구	동구	-	세종시	부천시 안양군 오산시 남양주시
민간주도형	마포구 금천구	강서구			광산구				수원시 시흥시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공공주도형	속초시 태백시	청주시	아산시 서천군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영암군	구미시 충청남도 김천시	거창군 합천군	과천시	
민간주도형		속주시		고창시 고창군		영주시			

##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심의 자문사항 추가내용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 관련 내용 추가
-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및 추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운영 등

#### 위원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로 범주 확대
- 복지위원의 대표자 명시
- 재정지원 근거 명시

### 읍면동 민관협의체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구성 및 운영

- 복지대상자 발굴을 목적으로 자율구성 ▶ 하위법령 일부 규정
- 법률 및 조례 근거 없는 경우 상당 ▶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마련 필수

#### 주요 역할 및 기능

- 복지 사각지대 발굴활동에 집중 ▶ 사각지대 발굴 뿐 아니라 민간 자원발굴, 읍면동 복지관련 주요 사항 논의 등 수행

\* 법률 및 하위법령 '15.7월 시행

## 주요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확대

- ✓ 협의체 참여범위를 복지, 보건 외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으로 연계·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협의체 위상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유도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관리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협의체 참여 의무화
- ✓ 보장기관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한 협의체 운영여건 개선 유도
  - 협의체 운영 활성화 핵심인 상근간사 인건비 일부 지원 검토('16년 예산요구)
-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을 통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 사회보장 대상자, 자원발굴 및 연계 등 읍면동 단위 협의체에 명확한 역할 부여

## 주요 추진 계획

### 각종 법정위원회 통합운영 등을 통한 협의체 심의기능 내실화

- ✓ 각종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 협의체 내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심의기능 수행 지원
  - \* 개별법령에 근거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 ✓ 실무분과 활성화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기능과 연계 강화
  - 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조정 유도
  - 실무분과 조직·운영의 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 지원
  - \* 협의체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시 서비스 연계·협력의 평가비중 확대('15년 하반기)

3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개편



주요 추진 계획

협의체 간 교류·협력 촉진 및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 전국 및 지역대회 개최시 시군구 협의체 참여를 유도하여 그간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및 포상 추진
  - 지역복지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건의, 보건의로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등 기능 수행의 충실성 또는 적정성 위주로 심사
  - 중장기적으로 협의체 운영 부진지역을 선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간 민관 협력의 균형발전 지원



4.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반 확충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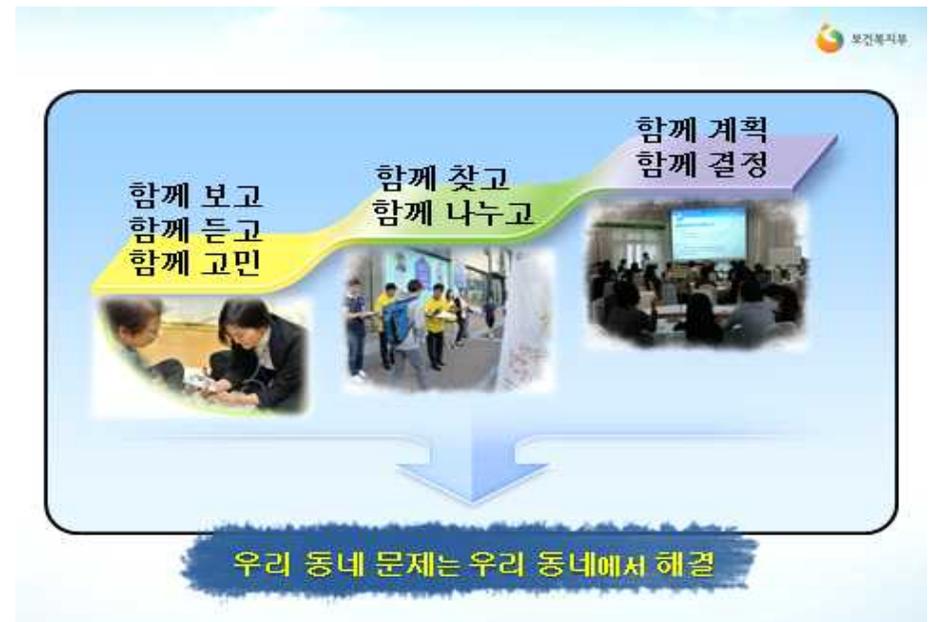
-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사례집 발간, 홍보 등을 통한 확산



통장, 종교기관, 민간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등

사각지대 관리DB 구축 및 운영

- 복지급여 신청탈락중지자, 단전·단수 가구 등 잠재적 위기가구 정보 연계(11개 기관 23종 정보)
- 읍면동 담당공무원, 주민 인적안전망 등에 제공





2015  
 제2회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집중세미나

강의 II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년을 통한  
 미래의 민·관 협력

이경은 |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

- 고양시신도동종합복지회관장
- 신도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고양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이사
-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년 을 통한 미래의 민관협력

**이경은**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고문)

##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



## 사회복지전달체계 다양한 개편

- 1. 보건복지사무소(1995. 7 - 2000. 7)**  
: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전국 5개 시범사업 실시: 중앙-지방의 이원화, 별도 설치로 접근성 문제, 보건-복지 업무 떠넘기기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2001. 10 - 2015.6)**  
: 서울 제외 전국 15개 시도, 각 1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능 연계, 민관협력서비스 체계
- 3. 사회복지사무소(2004. 1 - 2006. 6)**  
: 대상별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개편: 복지행정 전문성 부족, 1-2명의 복지전문요원 짝대기 집중문제, 민간연계체계 미흡

-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2006. 7 - 2008.12.)**  
: 수요자중심의 복지통합 전달체계, 지방행정을 복지중심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8대 서비스 영역 업무 개편, 읍면동 원스톱서비스
-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주민생활지원서비스통합지침(2009. 1. - 현재)**  
: 수요자중심의 복지통합전달체계, 지방행정을 복지중심으로 민관협력, 8대 서비스 영역 확대 적용
-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5년 7월 시행)**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없어지고, 모법 사회복지기본법으로 옮겨지면서 사회복지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4조로 제정, 기능확대,

##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의 기본 원칙

지역성(지역 현안 관심)

참여성(네트워크, 자발성)

협력성(자원연계, 해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요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 개발과 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역할과 예산 효율화

지역사회복지계획 체계화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

1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2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 협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과

사회자본의 형성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기능강화 방안추진방향

- 지역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복지협력체계 모델 개발
-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화 노력 지원
- 공공·민간·주민 등 협력 주체 간 권한 부여를 통한 실질적 협치 구현
- 지역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핵심역할 수행 기대
- 복지문제해결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추진 경과

- 2013.0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발의 (2013.5.9, 김현숙 의원)
- 2014.03.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2014.3.28, 최동익 의원)
- 2014.4.15. 공청회에서 양법안 병합 합의(2014.4.15)
- 2014.1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임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 통과(2014.12.9), 공포(14.12.30)
- 2015.7.1. 시행

-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기능확대
-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층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내용(시군구 단위)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li> <li>-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자문 및 연계 협력기능</li> <li>-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li> <li>-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li> <li>-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li> <li>-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li> <li>-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li> </ul>
위원수 확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
협의체 구성 확대 및 인력/재정 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li> <li>-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li> <li>-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li> <li>-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li> <li>- 임기는 2년, 연임가능(공무원은 재직기간)</li> <li>-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li> <li>-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li> </ul>

1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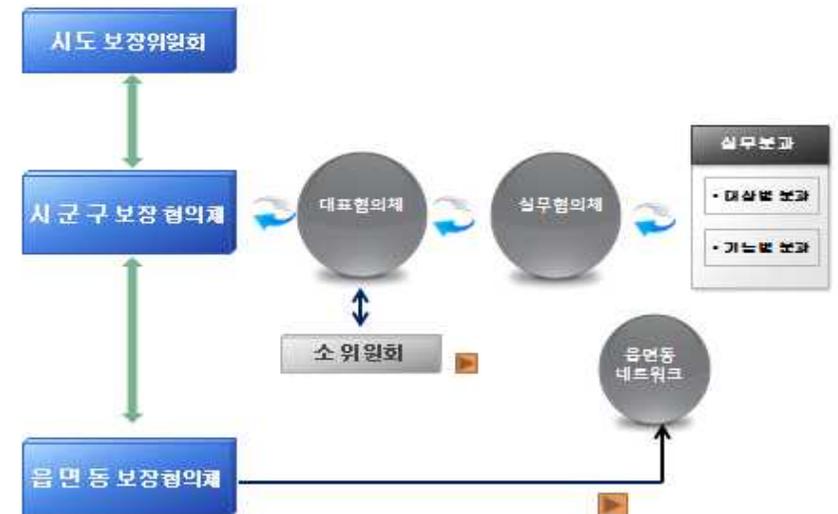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내용(읍면동 단위)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명칭 변경	복지위원	(읍면동) 복지위원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li> <li>-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li>-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li> <li>-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li> <li>-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li>-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li> <li>-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li> </ul>
임기 보완	- 3년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 기존 복지위원 및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기능 조정

- (복지위원) 기존 복지위원을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당면직 민간위원으로 위촉
- (민관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 또는 확대 개편

14



### ◆ 소위원회의 기능

- 소위원회는 사회보장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 소위원회 구성은 분야별로 구성
- 소위원회 역할은 분야별 심의 안건을 처리하는 역할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위원 3분의1과 공공기관 관련부서 과장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
- 상시적으로 심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심의 기능을 강화
- 소위원회에서 심의 했던 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될 경우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으로 처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군구 보장협의체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
- 읍면동 보장 협의체 정보공유 차원에서 분과형식으로 시군구보장협의체에 구축
- 읍면동 분과: 각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의 정보공유 및 상시적 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모임.
- 읍면동 분과에서는 시군구 보장협의체 당연직으로 참여( 분과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총무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 사회보장과 관련된 위원회 통합 효율화
-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조정역할
- 사회보장에 관련된 시책 및 사업 개발(자원개발)
- 편드시스템 구축(지원체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체계 구축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운영 지원



◀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 단서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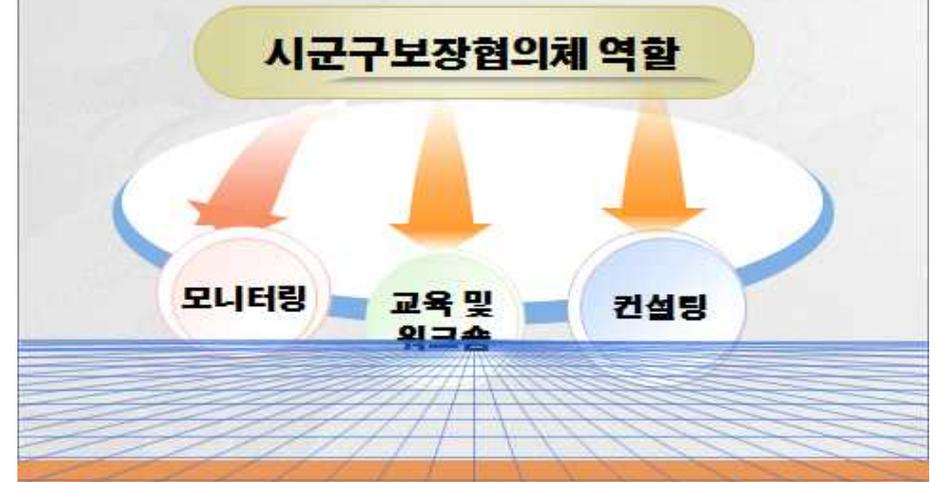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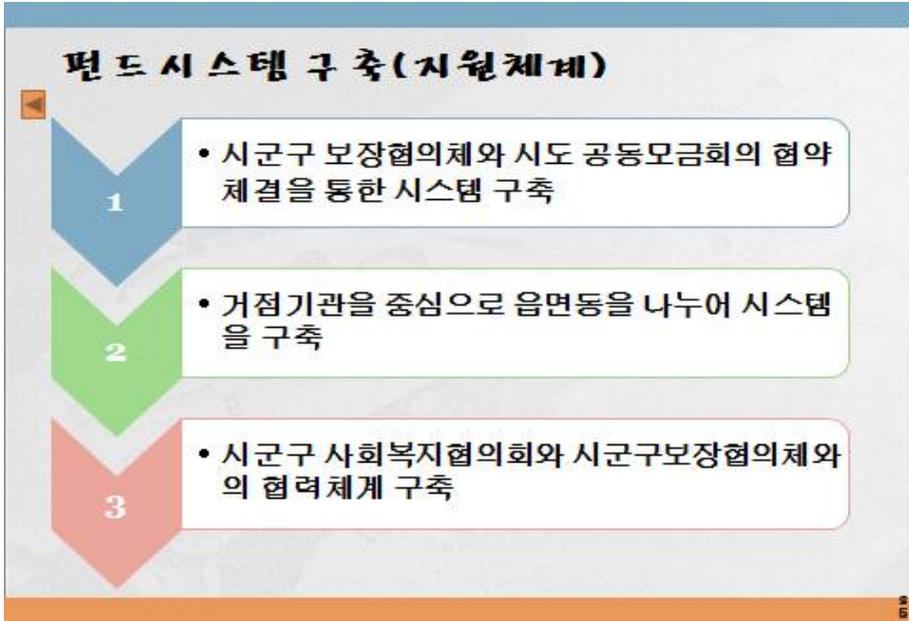
- 위기가정 상시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

- 읍면동의 책임하에 자체적 운영
  - 읍면동 단위의 복지기능 강화와 지역사회와 밀착한 사각지대 최소화(책임성 강화)
  - 읍면동 차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실무지원 담당자 선임.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운영 지원

### 시군구보장협의체 역할





강의 III

##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남궁제정 | 강원도실무협의체 대표

- 춘천YMCA 사무총장
-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14.12.31 기준)

시군명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장 유형			실무협의체 구성			실무분과 구성		비고
	소계	공무원 수	민간인 수	단독		공동	소계	공무원 수	민간인 수	분과 수	분과 총인원	
				공공	민간							
합계	358	70	288	2	2	14	361	108	253	118	1,196	
춘천시	19	3	16			○	20	5	15	6	68	
원주시	18	3	15			○	24	5	19	8	124	
강릉시	30	3	27		○		20	4	16	8	89	
동해시	20	5	15			○	18	3	15	6	60	
태백시	16	4	12			○	18	7	11	8	65	
속초시	26	3	23			○	26	4	22	8	87	
삼척시	19	8	11			○	17	3	14	8	54	
홍천군	28	4	24			○	25	8	17	8	85	
횡성군	15	3	12			○	14	2	12	5	55	
영월군	15	4	11			○	20	7	13	6	60	
평창군	20	3	17			○	25	10	15	7	45	
정선군	21	4	17			○	20	7	13	8	95	
철원군	18	6	12			○	15	8	7	7	63	
화천군	22	2	20			○	22	9	13	5	56	
양구군	15	3	12			○	21	7	14	3	39	
인제군	19	6	13			○	20	6	14	5	42	
고성군	18	3	15			○	18	10	8	6	65	
양양군	19	3	16	○			18	3	15	6	44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14.12.31 기준)

시군명	14년 회의개최 실적(회)			상근간사		2014 예산(천원)				비고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인원 (명)	최초 배치일	계	일반 운영비	사업비	상근간사 인건비	
춘천시	5	3	29	1	2011.03.01	75,000	4,900	35,000	35,100	
원주시	8	2	48	1	2010.04.16	95,000	11,395	45,500	38,105	
강릉시	3	1	35	1	2008.04.01	76,000	2,973	38,048	34,979	
동해시	5	11	26	1	2013.02.01	58,600	16,161	12,411	30,028	
태백시	0	0	28	1	2006	45,000	7,917	7,390	29,693	
속초시	4	3	36	1	2009.06.15	51,000	6,185	22,800	22,015	
삼척시	5	4	19	1	2013.05.01	128,012	29,762	67,496	30,754	
홍천군	3	1	52	1	2012.07.01	60,000	17,000	16,000	27,000	
횡성군	2	3	21	1	2013.09.02	47,600	5,600	12,000	30,000	
영월군	2	4	43	1	2010.09	51,000	7,000	17,000	27,000	
평창군	5	6	29	1	2013.07.01	48,000	6,924	15,179	25,897	
정선군	3	4	38	1	2007.05.04	35,599	3,439	8,176	23,984	
철원군	2	2	18	1	2013.04.15	44,971	5,013	5,896	34,062	
화천군	2	2	25	1	2012.02.15	100,899	4,307	65,900	30,692	
양구군	7	5	6	1	2013.05.06	30,000	-	-	30,000	
인제군	3	4	30	1	2012.02.01	92,590	6,290	57,300	29,000	
고성군	5	3	31	1	2012.03.12	35,000	1,926	6,254	26,820	
양양군	2	-	12	1	2013.05.01	33,000	3,292	3,922	25,786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활동 현황

( '14.12.31 기준)

시군명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비고
	주요안건(심의) 내용	주요활동 내용	
춘천시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의 -제3기 춘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2014년도 활동결과보고 -2015년도 계획안내 -우체국공익재단 복지사각지대사업 업무협약	-제3기춘천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 및 핵심사업 개발 논의, -연차별시행계획 결과 평가 및 수립 회의 -실무분과 사업 논의	
원주시	-2014연차별시행계획(안)심의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추진보고및TF팀구성 -2013연차별시행결과평가심의 -3기지역사회복지계획(안)심의	-3기복지계획(안)논의 -실무분과사업추진계획 -핵심과제선정논의 -사례회의등	
강릉시	-2014년협의체사업계획·예산안심의 -강릉시협의체운영규정수정안심의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TF구성안협의 -2014년희망강릉365사업추진계획안적정성심의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제도운영세칙(안)심의 -외부이사후보자적격여부최종선정심의 -2014년상반기생활보장소위원회사후심의 -제3기강릉시지역사회복지계획(안)심의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후보자최종선정심의 -2014년협의체사업계획·예산변경심의 -2014년협의체추천사업결과보고	-제5회 실무협의체 위촉식	
동해시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간조사 계획 -2014년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계획 -2014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계획 -2014년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 -2014년 1분기 자활기금 용자대상 심의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연장 결정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안내 -2014년1분기긴급지원사후조사결과심의 -자활기금 용자금 연체금 결손 및 면제처리 -기초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에 따른 보호 적정성 심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분과별 욕구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사회복지페스티벌 T/F회의 -실무분과 특화사업(안) 논의	
태백시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대회개최	
속초시	-2014년 협의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제6회 사회복지대축제 개최 계획 보고 -2014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심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변경심의 등 -2014년 사업추진 및 예산결산보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안)의견수렴 -협의체 사업에 대한 논의 및 평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한 논의 -분과별 자체추진 사업 논의 및 평가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활동 현황

( '14.12.31 기준)

시군명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비고
	주요안건(심의) 내용	주요활동 내용	
삼척시	-삼척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외부추천이사 추천 -2014 지역사회복지조사 추가항목 협의 및 의견수렴 -복지박람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 -2015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계획(안)심의	-연차별복지계획모니터링 -세미나 및 박람회 추진 등 사업협의	
홍천군	-연차별복지계획(안)논의 및 심의 -법인사외이사추천	-실무분과사업추진계획 -핵심과제선정논의 -사례회의등	
횡성군	-'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토의 -연차별복지계획평가토의	
영월군	-외부이사적격심사 -제3기지역복지계획TF팀 구성안협의 -제3기지역복지계획 심의 등	-연차별복지계획모니터링 -분과별 캠페인	
평창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복지계획수립 심의등	-복지계획수립,자원관리사업연계심의	
정선군	-제3기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 및 TF팀 구성 의결 -제3기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개최 의결 -연차별시행계획시행평가 -고유번호증대표자명변경 -정선군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안내 책자 제작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의결	-아동관련시설연합체육대회및연합캠프시행안 -사례관리수퍼비전에대한기관별연계방안필요 -관외지역병원이용시동서비스필요 -여성공감수다거리조성필요 -기초생활수급권에대한기관실무자대상교육방안 -사회복지시설사업설명회강원랜드복지재단과연계 -실무분과활성화지원사업선진지견학 -김장및명절용품중복서비스에따른대안필요	
철원군	-민간부분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제3기 철원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심의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기획 -제3기철원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철원군복지지원 관련 1만 및 단체 인력차 지원계획 -분과별 회의 및 활동 활성화관련 토의	
화천군	-기부금 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심의 -외부이사추천심의 -13년 사업결과 및 14년 사업-계획 보고	-평생학습 사회복지한마당 -사회복지중사자 체육대회 -3기위원 위촉식 및 워크샵 -늘 푸른 청춘 사랑합니다(노인분과) -청소년 방과후 쉼터 조성 연구조사(아동청소년분과) -잠깐만 생각해 봐요(여성보육분과) -장애인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장애인분과) -가족 산소길 걷기(시민문화분과)	
양구군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안내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간조사 계획 - 2014년 자활기금 용자대상 심의 -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연장 결정 - 2014년 긴급지원사후조사결과심의 - 희망양구사랑나눔 연계모금 운영 및 배분심의 - 양구군복지지원 안내책자 발행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분과별 욕구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 사회복지페스티벌 T/F회의 - 실무분과 특화사업(안) 논의 - 분과별/사업체별 사업안내 및 현황공유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활동 현황

( '14.12.31 기준 )

시군명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비고
	주요안건(심의) 내용	주요활동 내용	
인제군	-2013년 연차별시행계획심의 -제3기지역복지계획 TF팀 협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우체국공익재단 사업 지원보고 -외부이사추천심의 등	-제3기 복지계획 비전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청소년 DMZ평화 음악회 개최(실무협의체) -제3기복지계획 설문지 작성 및 연차별계획 모니터링 -우체국공익재단 사업 사례회의 -돌보기안경지원사업(노인분과) -미야방지용벤티만들기(영유아분과)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아동청소년분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의견수렴(장애인분과)	
고성군	-지역복지협의체 민간 위원장 호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욕구조사 적정 심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적정여부심의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도움, 나눔 업무협약식	-분과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 논의 -분과별 지역복지계획수립 세부사업 회의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 참여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대상자 문제해결 방안 및 서비스지원 계획 논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 워크숍 및 평가회 참여	
양양군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논의 및 심의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빨간모자야 위험해) -“멘토와의 대화” 청소년 프로그램 <b>인성교육</b> 실시 -정신건강의 날 가두 캠페인 및 상담부스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가두캠페인 및 검사부스운영 - <b>힘찬 도약! 평등도시 양양</b> 과 함께하는 ~ 관내행사 배너설치, 리플렛 제작 및 <b>홍보!</b> - <b>재능기부</b> “노인복지시설방문 건강노래교실”운영 - <b>보건복지 네트워크</b> 를 통한 사회서비스연계사업실시 -지역내 서비스제공기관 및 단체간 연계협력사업강화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복지자원 발굴	

#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운영 현황

(사업완료 결산기준)

시군명	계획수립 과정						비고
	수립 방법	욕구조사	계획수립	예산 (천원)	참여내용	간사 참여내용	
춘천시	자체 수립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 T/F팀 구성	30,000	- 복지계획수립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 복지욕구조사원 교육 및 조사 결과 분석 - 주민참여형 토론회(타운미팅) 개최 - 실무분과별 회의 개최 - 신규핵심사업 및 영역별 복지사업 확인 - 보고서 작성 - 복지계획(안) 심의	- 전문연구원(복지욕구조사/컨설팅) 섭외 - TF팀 및 실무분과별 회의 개최 준비 - 토론회 기획 및 준비 - 복지욕구조사원 교육 준비 - 복지계획 수립비(예산) 집행 및 정산 - 복지계획 초안 작성 참여	
원주시	자체 수립	읍면동 공무원	민.관 T/F팀 구성	33,695	- 협의체 중심의 T/F팀구성 - 연구진에 협의체 위원 참여 - 민간대표위원장 책임연구원 활동 - T/F팀 관련 공무원 적극참여 - 실무분과별 회의 및 논의 - 협의체 담당자의 공무원 참여 독려	- 관련회의 참여 및 회의 자료 준비 등 - 보조연구원 수준 업무활동 - 보고회 공청회 등 기획 추진 - 사업비 집행관리 ※ 1인 간사체제로 복지계획수립 참여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의사안에 대한 조정이 있어 가능했음	
강릉시	자체 수립	전문조사 기관 의뢰	민.관 T/F팀 구성	40,000	- T/F팀 구성 - 분야별 간담회 및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 - 복지계획(안) 심의 - 복지계획 시민공청회 개최 - 복지계획 수립 홍보 및 참여 독려	- T/F팀 구성 - 관련회의 참여 및 회의 자료 준비 등 - 분야별 간담회 및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 - 보고회 공청회 등 기획 추진 - 사업비 집행관리	
동해시	자체 수립	연구원 및 공무원	민.관 T/F팀 구성	50,000	- 공동팀장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책임연구원 위촉 - 민.관 T/F팀 구성 - T/F팀 관련 공무원적극 참여 - 책임연구원 (외부전문가) - 모든 실무분과별 복지계획 관련 회의 및 논의	- 관련 회의 참여 및 회의 자료 준비 등 - 공청회 보고회 등 기획 추진 - 모든 실무분과별 복지계획 관련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태백시	자체 수립	분과위원 및 공무원	민.관 T/F팀 구성	470	- 민.관 T/F팀 구성 - T/F팀 관련 공무원 적극 참여 - 모든 실무분과별 복지계획 관련 회의 및 논의 - 욕구조사 및 자원 조사 등 세부계획논의 -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방향논의 - 분과별 및 통합분과회의를 통한 복지계획 조정 의견수렴	- 관련 회의 참여 및 회의자료 준비 등 - 실무분과별 복지계획 관련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욕구조사관련 준비 및 진행, 분석, 통계자료 작성 - 욕구조사와 분과별 계획논의를 통한 복지계획 초안작성	

###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운영 현황

(사업완료 결산기준)

시군명	계획수립 과정						비고
	수립 방법	육구조사	계획수립	예산 (천원)	참여내용	간사 참여내용	
속초시	옹역	전문조사원 의뢰	민.관 T/F팀 구성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 사전 21C 타운미팅 개최(100명참석)</li> <li>- 민·관 대표자, 실무자중심의 T/F 구성</li> <li>- 육구조사 실시 등 협의 : 프랭카드 부착</li> <li>- 계획수립에 대한 기본방향 논의</li> <li>- 육구 및 자원 조사 등 세부계획 논의</li> <li>- 전문 조사원 교육</li> <li>-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급 교육참여</li> <li>- 주민육구조사 결과 분석</li> <li>- 분과별 복지계획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회의 참석</li> <li>- 육구조사 참여</li> <li>- 분야별간담회 및 기관방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li> <li>- 보고회, 공청회등 기획 및 참여</li> </ul>	
삼척시	옹역	옹역 (조사원)	민.관 T/F팀 구성		-복지계획 용역보고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li> <li>-복지계획에 대한 건의안을 지자체에 제시</li> <li>-2014지역사회복지조사 추가항목 협의안 제시</li> </ul>	
홍천군	옹역	옹역	옹역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계획(안) 심의</li> <li>- 3기 복지계획 수립(안) 중간보고 워크숍</li> </ul>	- 분야별 간담회	
횡성군	부분 자체 수립	송호대 산학협력단	민.관 T/F팀 구성	9,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구성</li> <li>- T/F팀 총괄로 주무부서장/실무협의체위원장 위촉</li> <li>- 분과별 의견 최대한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참여 및 회의자료 준비 등</li> <li>- 보고회 추진</li> <li>- 사업비 집행관리</li> <li>- TF팀장 보좌</li> <li>- 기관 팀 간역역간 협의와 조정 업무 등</li> </ul>	
영월군	자체 수립	조사원	민.관 T/F팀 구성	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구성</li> <li>- 책임연구원(실무협의체위원) TF팀 위원장으로 실무협의체 위원장 위촉</li> <li>- 분과별 복지계획 중심 회의(4월~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참여 및 회의자료 준비 등</li> <li>- 보고회, 공청회 추진</li> <li>- 사업비 집행관리</li> </ul>	
평창군	옹역	옹역	민관TF팀 구성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분과회의 및 논의</li> <li>- 중간, 결과보고회등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회의개최</li> <li>-보고회,공청회운영</li> </ul>	

###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운영 현황

(사업완료 결산기준)

시군명	계획수립 과정						비고
	수립 방법	육구조사	계획수립	예산 (천원)	참여내용	간사 참여내용	
정선군	자체 수립	연구 용역단	민.관 T/F팀 구성	35,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구성</li> <li>- 연구진.협의체 위원 TF팀 회의 진행</li> <li>- 실무분과별 분임토의 내용 반영(공청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추진</li> <li>- TF팀 회의 참여</li> <li>- 사업비 집행 관리</li> <li>- 회의 참여 및 회의자료 준비 등</li> </ul>	
철원군	옹역	상지영서대 산학협력단	민.관 T/F팀 구성	37,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구성 및 회의</li> <li>- 책임연구원(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li> <li>- 육구조사 조사원 모집 및 교육</li> <li>- 육구조사 및 자원조사 실시</li> <li>-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보고회, 공청회</li> <li>- 제3기 지역복지계획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회의 참여</li> <li>- 회의 자료 준비 및 보고서 작성</li> <li>- 자원조사 참여</li> <li>- 보고회, 공청회 등 계획 및 참여</li> </ul>	
화천군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구성</li> <li>- 책임연구원(한림대학산학협력단)</li> <li>- 육구조사 요원 모집, 교육, 조사실시</li> <li>- 분과별 복지계획 중심회의(4월~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회의의 참여 및 회의 자료 준비 등</li> <li>- 워크숍, 보고회 기획 추진</li> <li>- 사업비 집행관리</li> <li>※ 사전에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간사의 업무 조정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었음</li> </ul>	
양구군	옹역	전문조사원 의뢰	민.관 T/F팀 구성	4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 구성</li> <li>- T/F팀관련 공무원 적극참여</li> <li>- 모든 실무분과별 복지계획 관련 회의 및 논의</li> <li>- 육구조사 및 자원 조사 등 세부계획 논의</li> <li>-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방향논의</li> <li>- 분과별 및 통합분과회의를 통한 복지계획 조정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회의 참석</li> <li>- 육구조사 참여</li> <li>- 분야별 간담회 및 기관 방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li> <li>- 보고회, 공청회 등 기획 및 참여</li> </ul>	
인제군	옹역	전문조사원	민.관 T/F팀 구성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구성</li> <li>- 복지계획 비전수립 퍼실리테이션 워크숍</li> <li>- 육구조사 표본 및 설문조사 방법논의, 조사원 교육,설문, 자원조사, 복지기관 프로그램조사</li> <li>- TF간담회 3회 및 복지계획 협의 및 조정</li> <li>- 주민 공청회</li> <li>- 제3기 복지계획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참여 및 회의자료 준비</li> <li>- 워크숍, 보고회, 공청회 추진 등</li> </ul>	

#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운영 현황

(사업완료 결산기준)

시군명	계획수립 과정					비고	
	수립 방법	육구조사	계획수립	예산 (천원)	참여내용		간사 참여내용
고성군	용역	전문조사원 의뢰	민.관 T/F팀 구성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 참여</li> <li>- 실무분과별 육구조사 결과 논의.검토.수정</li> <li>- 복지계획수립 과제별 세부 사업 선정 논의.검토 반영</li> <li>- 복지계획(안) 심의</li> <li>- 제B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1c타운미팅(사회복지100인)</li> <li>- 지역복지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및 평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참석 및 회의자료 준비</li> <li>- 워크숍 및 역량강화 기획 추진</li> <li>- 실무분과별 회의 개최 의견수렴</li> <li>- 사업비 집행관리</li> </ul>	
양양군	용역	전문조사원	민.관 T/F팀 구성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T/F팀 구성</li> <li>-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논의 및 적극 반영</li> <li>- T/F팀 관련 공무원 적극 참여 독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회의 참여 및 사전 자료준비</li> </ul>	



강의 IV

## 시군 읍면동 인적안전망 확충 우수 사례 발표

이승우 |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담당

2015.8.27(목)

강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 속초시 민관협력 사업 사례 보고 - 아바이 이웃연대 -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이 승 우

## 1. 추진배경

### 위기의 복지재정

속초시 전체인구: 82,394명  
비경제 활동 인구: 34,664명(인구의 약 42%)  
속초시 예산 215,322,129 중  
복지예산 75,555,834 35%

### 취약한 지역경제

도시농업·농촌생태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민소득이 높지 않음  
주 수입 창출원: 수산업, 관광산업

### 복지욕구증가

### 급증하는 복지욕구

간급, 위급지원 급증(8.13일 현재)  
584가구 1,117명 399,897천원 집행  
전년 대비 33%증가

### 지역중심의 복지 실현

제도외는 무관한 위기가구의 발생  
세대차이, 등시차이 발생 증가

## 2. 일반현황(수요)

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장애연급		우선도봉아상위		기초연급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7,486	20,888	2848	4055	408	1,282	2,128	7,287	881	480	7,514	8,922
		자상위기관		영유아포육 육아확비		아동청소년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18	118	4278	4878	-	-	-	-	-	-	-	2820

### <자살률 연도별 추이>

시군구명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망자수 (명)	연평균 수사망률 (십만명당)								
전국	계	12,858	24.7	15,412	29.1	15,966	28.7	15,906	28.0	14,160	25.1
	남자	6,260	35.7	8,986	39.3	10,329	40.0	10,866	41.1	9,822	36.6
	여자	4,598	17.2	6,426	20.2	5,237	18.9	5,040	17.9	4,538	15.7
	계	579	33.0	698	38.1	672	36.8	697	37.7	583	31.4
강원도	남자	301	45.5	426	51.1	461	52.9	468	52.6	422	48.1
	여자	198	22.7	223	26.3	211	22.4	223	24.4	161	15.9
속초시	계	32	36.6	30	32.3	39	46.1	40	53.6	33	32.3
	남자	18	45.5	15	31.7	27	66.9	31	89.1	26	56.0
	여자	14	28.3	15	36.3	12	28.6	9	41.0	7	12.0

## 2. 일반현황(공급)

복지수요	기관종류	복지공급		
		인구대비 표준 충족율	현기관수	수요기관수
총 인구수	82,394	총합사회복지관 175,355		2.10
기초수급자수	4,055	총합사회복지관 (기초수급자 대비)	1	1.36
노인인구	12,319	노인복지기관	1	▼0.13
장애인인구	4,923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생활시설	1(본관) 3	▼0.31
아동인구수	15,786	아동복지기관	7	▼0.59
청소년인구수	15,952	청소년기관	3	2.40
여성인구수	41,842	여성기관	1	2.59
한부모가족수	1,132	한부모기관	0	359.8
다문화인구수	782	다문화기관	1	-
영유아인구수 (0-4세)	3,291	보육기관	66	-
총 인구수 대비	정신보건기관	174,505	1	2.10
	가정폭력, 성폭력 등 지역자활센터	133,338	2	1.60
		5,070	1	▼0.06

### 3. 15년 민관협력 사업(목표)

- 동 단위의 민관협력기구 강화로 증진한 생활복지 지원체계 구축
  - 동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주민참여 동별 특화사업 및 지원체계 운영, 지역민 중심의 복지공동체 운영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통장 복지교육, 유관기관 협약 등
  - 시단위 아바이아웃연대 봉사단 구성 운영, 지역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
- 효과적 통합 사례지원 시스템 구축
  - 감성복지 24시, 권역별 정기 이동사례회의, 민·관 합동 실무자 교육
  - 자업보고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 3. '15년 민관협력 사업 (단위과제)

목 차	목 표	평가방법
1 동 복지활동 체계 구축 (총괄운영위원회 지원 체계)	1-1 동 단위 복지협의체 구성	구성비율
	1-2 복지동장 관련 조례 개정	개정 비율: '15.8월말
	1-3 동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또는 개정	제정률비율: '15.7월말
	1-4 동 복지협의체 사례회의	회의횟수(월1회 이상)
	1-5 동 복지협의체 자재 지원개발	총량(분기인구대비)
1-6 동 1동 1특화 사업 추진, 지원노후, 프로그램	지속수립 및 실적	
2 지역자원개발 관리체계 구축	2-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자원 관리 및 연계	협의체 연계성과
	2-2 "아바이 아웃연대" 동장복지 아카데미 실시	연 2회
	2-3 정기대리 "아바이아웃연대" 집중교육 개최	연 1회 실시
	2-4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자원개발 노모	업무협약 및 연계실적
	2-5 "아바이 아웃연대" 봉사단 구성 활동	구성 및 활동횟수
2-6 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박산 참여 및 활동횟수	
3 효과적 통합 사례지원 시스템 구축	3-1 "감성복지 24시"	운영실적
	3-2 이동 사례회의 회의 정례화	정례 개최 실시비율
	3-3 사례지원 자원단 구성 및 회의실적	구성비율
	3-4 민·관 합동 실무자 교육	연 2회 실시
	3-5 인력안전망 구축(총괄운영복지대학원 제작)	제작 및 배포비율
3-6 민·관 협력사업 결과 보고서 생산	생산비율(12월말)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영향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09.9월)	주영태	27명	공동이기금	월2회, 저소득층 일반한지원	
주민자치위원회 ('12년)	주영태	27명	운영비	월1회, 어르신 이용서비스	
재마음지도자협의회 ('11년)	김영수	14명	회비, 보조금	연2회 저소득층 연안보일러 설치	
영랑청년회 ('11.3월)	윤중복	23명	회비	월1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도배, 장판 등)	
장사청년회 ('14.12월)	전재선	25명	기금	연1회 연말연시 저소득층 후원	
부녀회 (자선봉사) ('09.1월)	고형숙	5명	기금	월1회, 저소득 어르신독유지원	
영랑초교 파랑새 ('13년 11월)	이상현	30명	기금	연1회, 저소득층 건강지원	
고전장학회 ('15.3월)	박현진	2명	기금	연2회 아동연트링 장학사업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동명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현성준	28명	운영비, 지원 공동이기금	월1회 저소득층 일반한지원	
통장협의회 (2012.12월)	심용길	15명	회비	동계 어르신안부 전화서비스 (크로스)	
저소득어르신 무료독유지원 (2010.2월)	고형숙	1명	자부담	월1회 저소득어르신 무료독유지원	
이미용봉사 (2015.3월)	엄태순	1명	자부담	월2회 이미용(커피) 지원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금호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 2000 )	진선연	28명	회비	월 4회 푸드뱅크(제빵)사업	
주민자치위원회 ( 2000 )	진선연	28명	회비	월 2회 푸드뱅크(밀반찬)사 업	
주민자치위원회 ( 2000 )	진선연	28명	회비	연 3회, 명절 및 연말연시 저소득층 주원	
나래회 ( 2010.12월 )	김무용	14명	회비	연 2회 실명질, 추석 저소득층 주원	
금호동 봉정협의회	최승철	30명	회비	연 1회 (연말연시) 저소득층 주원	
MG속초중앙 생마을금고	최영철	30명	기금	연 1회 (연말연시) 저소득층 주원	
중앙민청	김무용	-	자부담	월 1회 중식(자장면)제공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노학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동장협의회	김희연	48명	회비	월5만원 지원 ( '15.2.28)	
			시비	사랑의 보물창고운영	
주민자치 위원회	최창순	28명	회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자원 봉사	푸드 이 - 미용봉사	
			회비	저소득층 연말연시봉사	
			시비	건강교실 및 방문보건사업	
189 홍보오티쿠이	김희환	1명	자부담	월1회 중식제공	
주민자치위원 회( '15.2.4)	김무용	1명	자부담	월5만원 지원	
동장 정경환우	김기춘	1명	자부담	월1회 중식제공	
속초민청 연말연시 연말연시	최창순	10명	회비	미주 민요원 부수(중식)제공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교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새마을부녀회 ( 2000 )	김순자	22명	회비	월 1회 무료복용사업	
주민자치위원회 ( 2000 )	최승철	28명	회비	월 2회 푸드뱅크사업	
"	"	"	"	월 8회 야쿠르트지원	
이미용 봉사 ( 2006 )	이은희			월 1회 이미용봉사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조양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이건형	28	회비	지역주민 건강검진 동철기 김장김치 지원	
봉정협의회	김모용	40	회비	취약계층 보호복지지원금	
조양동청년회	임향식	20	회비	무료방구장 운영	
새마을부녀회	오우자	21	회비	원장 및 열무김치등 지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영철	21	회비	자장면무로담식(2014년) 점수리지원사업(2015년)	
이마르속초점 김천봉사회	정성수	30	회비	무로담식 (도시락해달)	
중앙새마을금고 자원봉사회	한상기	30	회비	이웃돕기 생필품 및 자장면무로담식	

## 4. 동별 민관협력 사업

### ■ 청호동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박혜철	25명	회비 및 수입사업	분기1회 생활공동체 (사랑의장바구니)	
주민자치위원회	박혜철	25명	회비 및 수입사업	연2회 생활공동체	
바르게 살기위원회	김광필	10명	회비	연1회 연탄지원	

### ■ 대포동

단체명 (구성일)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재원	사업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회	오정석	27명	예산	월2회 필한잔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오정석	27명	예산	연1회 사랑의 장갑달리기	
새마을금부연합회	정원수	10명	회비	분기별 1회 저소득가구정수리지원	

## 5. 민관협력 지원 사업

### ■ 아바이 안심콜

지역 유관기관 및 동 복지위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을 망라하여, 요보호가구 11 맞춤형지원, 신속한 위기가구 발견을 위한 **“속초형 지역사회 안전안심콜”**

- 사업개시일 2014. 8. 29 발대식 및 사업 개시
- 동원자원 : 안심콜 봉사자 55명 활동중
- '15년 실적 : 독거 및 질병세대 63가구
  - 연 6회 대상가구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15년 8월 현재 연 431명 772회 서비스연계
- sns (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소통

## 5. 민관협력 지원 사업

### ■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

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가정을 발견,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할 경우 대상가정의 욕구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비등 8종의 지원을 실시하는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단, 속초우체국,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우체국공익재단의 안전안심콜”** 공모사업임

- 사업개시일 : 2015. 4.
- 동원 및 가용자원 : 속초우체국 우체부 52명, 사업비 40,000천원 지원
  - 사업비 전액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
- 대상자 발굴 방법
  - 우체국 집배원 지역 순회업무 시 위기 긴급가정 발굴 제보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의 sns 시스템을 이용한 제보 및 결과 통보
  - 속초시 아바이안심콜(속초시 자체사업) 지기단과 연계 활동 전재
  - 희망복지지원단과 우체국 공공자원의 연계, 실효적 사례지원 실시

'15년 8월 현재 13명 21,299천원 지원

## 5. 민관협력 지원 사업

### ■ 위기 긴급가정 지원사업

- (목표) 행정절차 및 규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 시민 지원
- (협약기관) 속초시사회경제적네트워크(사회적기업 연합체)
- (내용) : 연간 30,000천원 기금 후원
  - 사회적 기업의 의무사항인 사회공헌기금 창구 일원화
  -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 '15년 8월 현재
  - 13가구 5,890천원



## 5. 민관협력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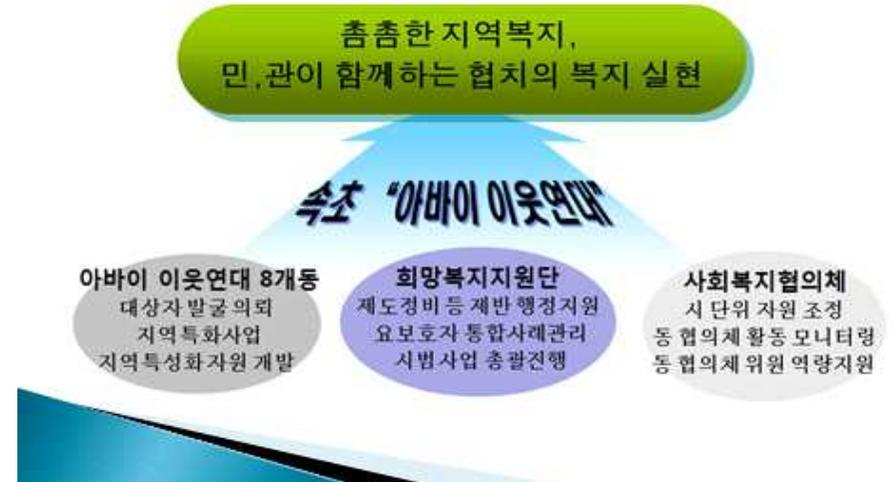
### ■ 감성복지24시

- (목표) 지원신청 후 24시간 이내의 1차 상담 및 지원, 시간적 사각 지대 없는 지원 체계 운영
-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욕구별 지원
- 주요내용
  - 행정절차 및 관례상 지원요청 후 최소 48~72시간 소요후 지원
  - 지원요청 주민에 대해 최24시간 이내 현장 상담 및 1차 지원 확행
  - ⇒ 현금, 현물지원 중심의 서비스와 현장상담을 통한 위기·긴급가정의 심리적 위기감 해소 및 안정 도모
- (추진결과) '14. 10월~'15. 8
  - 현장방문 상담(평균 1,5시간), 1차 현물지원(4,5시간) 소요
- (동원자원) 속초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위기·긴급가정 지원 기금 활용"

## 6. 속초시 민관협력 기관 업무

기관	역할
동 복지협의회 "속초 아바이 이웃연대"	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 사례지원 의뢰 동별 지역 특화사업 수립 추진 동별 동원 자원의 계량화 및 실적관리
사회복지협의회	기존 기관 중심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동 협의회 위원 및 주민 교육 프로그램 실시 동 협의회 활동 월 1회 모니터링 의뢰 사례에 대한 신속한 자원 연계 및 개발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사업 관련 기관 조성 : 관련 법규 제개정 사업사업 기본계획 및 총괄 계획 수립 추진 지역 의뢰 사례에 대한 체계적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그룹의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행정, 재정적 지원 지속 실시

## 7. 결 론



# ※ 부 록

## 《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락망 》

지역명	구분	이름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춘천시	대표협의체	공공	최동용	춘천시	033-250-3204	033-250-3453	-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민간	차홍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회장)	033-243-4545	033-243-4546	changmb@hanmail.net	춘천시 중앙로 68번길 54
	실무협의체	남궁제정	춘천YMCA(사무총장)	033-255-1001	033-262-1006	e-ymca@hanmail.net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상근간사	박금화	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250-4164	033-250-3486	ccwelfare@korea.kr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원주시	대표협의체	공공	원창목	원주시청	033-737-2001	033-737-4801	-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민간	송정부	강원도공동모금회	033-743-5878	-	ksjb46@naver.com	-
	실무협의체	오경석	한라대학교	033-760-1499	033-760-1322	ksoh@halla.ac.kr	홍업면 홍업리 한라대학교	
상근간사	김규나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735-2613	033-735-2614	gyunak@hanmail.net	원주시 갈머리2길 31 사회복지센터 305호		
강릉시	대표협의체	민간	심재빈	(사)솔향노인복지회 (회장)	033-648-1201	033-648-3688	-	강릉시 경강로 2167-1(옥천동)
	실무협의체	최상익	선한복지센터 (소장)	033-655-0655	033-655-4123	yknoin@daum.net	강릉시 성산면 금산안길 100-6 선한복지센터	
	상근간사	박순천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640-5738	033-640-4743	paran33@gn21.kr	강릉시 강릉대로33 강릉시청5층 복지정책과	
동해시	대표협의체	공공	심규언	동해시청	033-530-2114	033-533-9511	-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민간	김경수	동해지역자활센터	033-535-1648	033-535-1658	hampu@hanmail.net	동해시 발한로 211
	실무협의체	서순영	월드비전	033-533-8247	033-533-8248	ssyna@hanmail.net	동해시 전천로273-10	
상근간사	박윤숙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35-2093	033-535-2094	dhswc@naver.com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복지와 내		
태백시	대표협의체	공공	김연식	태백시청(시장)	033-550-2100	033-550-2009	vital21@taebaek.net	태백시 태봉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민간	이 근	안식의집	033-552-5561	033-553-5591	leekeun57@naver.com	태백시 문화로 25
	실무협의체	박경희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	033-552-1272	033-553-2664	aha369@lycos.co.kr	태백시 서학1길 58	
상근간사	송기호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53-3807	033-554-3047	chingu033@hanmail.net	태백시 대학길 80 (중앙하이츠 107동 B204)		

지역명	구분	이름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속초시	대표협의체	공공	이병선	속초시청	033-639-2201	-	-	속초시 중앙로 183
		민간	한성수	경동대학교	033-639-0347	033-639-0349	hass77@k1.ac.kr	고성군 봉포 4길 46
	실무협의체	김원범	속초YMCA	033-631-8909	033-637-0924	y00414@hanmail.net	속초시 청호로 3길 57	
	상근간사	이은주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639-2959	033-633-2959	mlin6478@hanmail.net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사회복지회관 3층	
삼척시	대표협의체	공공	김양호	삼척시청	033-570-3201	-	-	삼척시 중앙로 296
		민간	홍우성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75-3789	033-575-3778	hongdan1014@hanmail.net	삼척시 봉황로 91-39
	실무협의체	정연만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75-3789	033-575-3778	adsl559954@daum.net	삼척시 봉황로 91-39	
	상근간사	박정화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75-3789	033-575-3778	p2235203@naver.com	삼척시 봉황로 91-39	
홍천군	대표협의체	공공	노승락	홍천군	-	-	-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홍천군청
		민간	송우식	사회복지시설연합회	033-433-7667	433-7669	-	홍천군 북방면 성동로 949-23
	실무협의체	박준교	사회복지법인성효원	033-435-9195	435-9196	-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굴운로 435-15	
상근간사	신정숙	홍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430-2077	430-2069	tkcnsr1qhd10@hanmail.net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홍천군청 주민복지과		
횡성군	대표협의체	공공	한규호	횡성군	033-340-2114	-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3
		민간	전덕중	종합사회복지관	033-345-3450	033-345-3460	-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46
	실무협의체	이은애	종합사회복지관	033-345-3450	033-345-3460	jangunne@hanmail.net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46	
	상근간사	이정윤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343-4050	033-340-2556	ljystar1117@naver.com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3 주민생활지원과	
영월군	대표협의체	공공	박선규	영월군청	033-370-2201	-	-	영월군.읍 하송로 64
		민간	노인국	사회복지회	033-373-3993	033-374-6413	smgma220@hotmail.com	영월군.읍 하송로 46-43
	실무협의체	장은석	세경대학교사회복지학과	1577-3390	033-371-3029	ksrd@nate.com	영월군.읍 하송로 197 세경대학교	
상근간사	엄경희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370-1768	033-375-2882	tonami74@naver.com	영월군.읍 하송로 46-43		
평창군	대표협의체	공공	심재국	평창군청	033-330-2201	-	-	평창군.읍 군청길77
		민간	고영배	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	033-332-2973	-	-	평창군.읍 평창중앙로67 문화복지센터2층
	실무협의체	김선형	평창지역자활센터	033-332-5432	-	-	평창군.읍 노성로129	
상근간사	천미현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330-2352	033-330-2557	mihun0708@hanmail.net	평창군.읍 군청길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지역명	구분	이름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정선군	대표협의체	공공	전정환	정선군청	033-560-2201	033-563-8502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민간	배은하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033-562-2922	033-563-2923	qoeksvnd@hanmail.net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진용철	정선지역자활센터	033-592-4115	033-592-4117	kosjin68@hanmail.net	정선군 남면 무릉1로 56
		상근간사	전미숙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563-7735	033-563-7736	js2007welfare@hanmail.net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6(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3층)
철원군	대표협의체	공공	이현종	철원군수	-	-	-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민간	안창도	철원군자원봉사센터	033-456-1365	033-450-5018	cwvc1365@hanmail.net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28번길 27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신호승	YMCA철원평화센터	033-455-3795	033-455-9196	snrymca@hanmail.net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17번길 19
		상근간사	이상민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450-4641	033-456-5007	sky0945@korea.kr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화천군	대표협의체	공공	최문순	화천군	033-440-2202	440-2454	rlagus2012@korea.kr	화천군읍 화천새싹길45 화천군청
		민간	안귀환	화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10-8620-5610	-	-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888-3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이 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10-5246-6673	-	networkemind@hanmail.net	춘천시 석사동 그랜드아파트 101-201
		상근간사	김 현	화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440-2330	440-2454	rlagus2012@korea.kr	화천군읍 화천새싹길45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양구군	대표협의체	공공	전창범	양구군청	-	-	-	양구군읍 관공서로 38
		민간	임태현	양구군이장연합회	010-8878-1170	-	-	양구군읍 중심로 9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박찬일	양구군새마을지회	010-9357-3703	-	-	양구군읍 중리 양구군새마을지회
		상근간사	이상준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480-298	033-480-2323	sj110@korea.kr	양구군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인제군	대표협의체	공공	이순선	인제군청	033-460-2001	-	-	인제군읍 인제로187번길 8
		민간	공석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이주상	설악산배움터	070-7565-2841	02-6008-2841	wefield@daum.net	인제군 북면 금강로33번길 9-6
		상근간사	김영숙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460-2213	033-460-2219	ijwelfare@korea.kr	인제군읍 인제로 187번길 8 주민복지과 내
고성군	대표협의체	공공	윤승근	고성군청	033-680-3310	033-680-3168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민간	함명준	고성군의회	033-680-3511	033-680-3156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의회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최인선	고성군청	033-680-3310	033-680-3168	cis0514@hanmail.net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주민생활지원과
		상근간사	엄미경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680-3329	033-680-3168	ommi30@hanmail.net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주민생활지원과
양양군	대표협의체	공공	김진하	양양군청	033-670-2201	033-670-2314	-	양양군읍 군청길 1
		민간						
	상근간사	실무협의체	이건필	양양지역자활센터	033-673-4848	033-673-4849	kp8125@naver.com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5
		상근간사	김현희	양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3-670-2264	033-670-2790	kh2989@hanmail.net	양양군읍 군청길 1 양양군청 1층 주민생활지원과